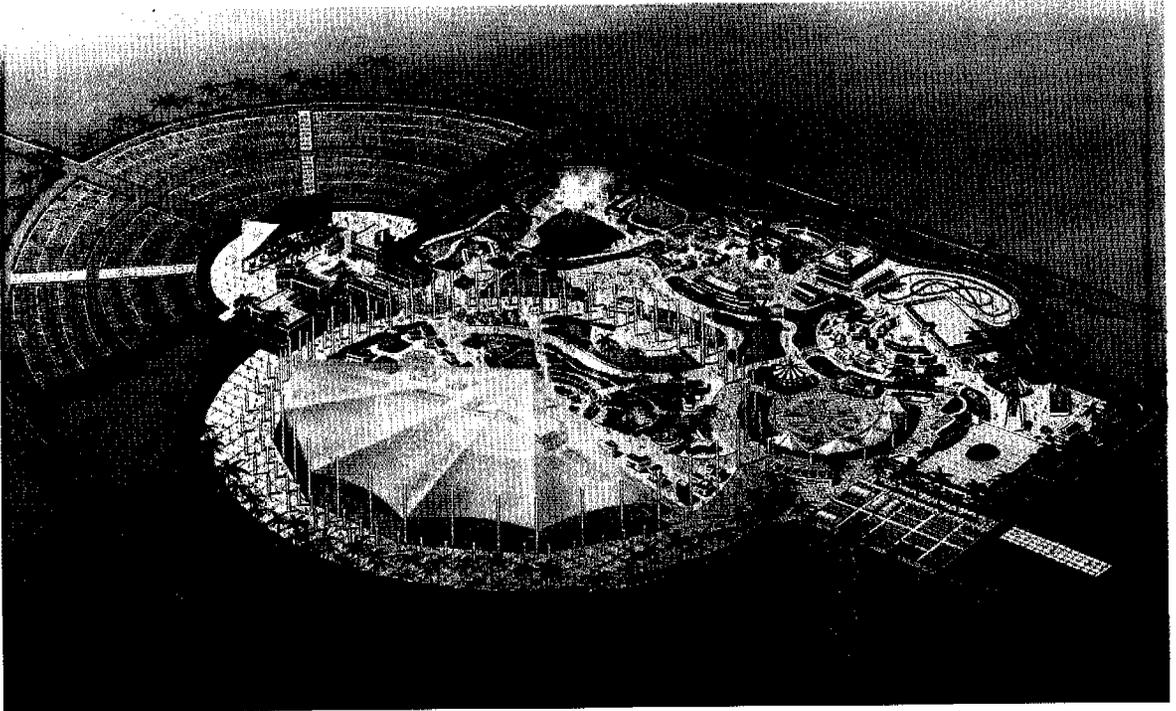


**The Philippine Centennial
Exposition 1998**

**필리핀 엑스포 '98
종합보고서**



The Philippine Centennial Exposition 1998
1998. 6. 6~1999. 1. 31



한국관 테이프 커팅('98. 6. 6)

좌측부터, 박동 순 대사, 라모스 대통령, 대통령 영부인, NCC 위원장 부인, 한국관 관장



이수성 특사 한국관 방문(98. 6. 13)



Korean Festival Week 리셉션에서 축사하는 KOTRA 김은상 사장



Korean Festival Week 리셉션의 VIP 영접



공연단(심가희 무용단)과 함께



한국관 입구에 내방객들이 즐지어 서있는 모습

머 리 말

필리핀 엑스포는 국제박람회기구(BIE) 비공인엑스포로서 전시수준이나 규모가 공인엑스포에 비해 다소 떨어진 것이 사실이었지만, 우리나라는 전통적인 우방국인 필리핀과의 정치, 외교, 경제, 문화적 이해관계 강화를 위해 동 엑스포에 참가하였습니다.

박람회 주제는 “1898년 독립정신의 재조명”으로서 과거 필리핀 민족들의 영광을 일깨우며 현재의 활동상을 자축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제시하는 것으로, 재분야에서 인간노력을 중심으로 연출하였는데, 우리 한국관은 필리핀 엑스포 '98의 개최 목적과 성격에 맞도록 “한국과 필리핀, 우정의 가교(Bridge of Friendship Between Korea and Philippines)”를 주제로 전시 연출하였습니다.

310 S/M 규모의 한국관은 한국의 이미지와 역사·산업 및 한국과 필리핀간의 교류에 대한 국가 홍보 활동을 통해서 184일간의 개장 기간동안 1백만명이 넘는 필리핀 내방객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었습니다.

특히, '98. 8. 14-8. 20일중의 한국주간은 문화적 자부심을 갖고 있는 필리핀 국민들과 참가국들에게 한국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와 함께 한국에 대한 우호의 감정을 심어준 감동의 주간이기도 하였습니다.

'99. 1. 31일까지 한국관에 내방한 방문객이 전체 엑스포장 방문객의 78%에 달하고 있다는 점을 본다면 한국관에 대한 필리핀 국민들의 관심이 얼마나 높

았었는지를 알 수 있으며, 당초의 한국관 참가 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했다고 하겠습니다.

끝으로, 필리핀 엑스포 한국관 참가사업 수행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관계기관 및 업계 그리고 자문위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현지 여건하에서도 동사업을 위해 수고하신 담당처·부장, 그리고 한국관 운영요원들의 노고를 위로하면서, 이 보고서가 향후 엑스포 참가사업에 귀중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1999년 3월 8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통상기획본부장 정 해 수

목 차

I. '98 필리핀 엑스포	1
1. 필리핀 일반사항	1
2. 필리핀 엑스포 개요.....	3
II. 한국관 참가	5
1. 참가목적.....	5
2. 한국관 참가추진 경위.....	5
3. 추진기구.....	5
4. 기본계획.....	6
III. 한국관 전시장치	8
1. 개요.....	8
2. 한국관 설계	8
3. 전시연출 및 장치불	11
4. 한국관 시공.....	15
IV. 한국관 운영	42
1. 기본방침	42
2. 분야별 운영.....	43
3. 보고체계	47
4. 운영실적	50

V. 문화·홍보활동 및 특별행사	53
1. 민속예술단 파견.....	53
2. 특별행사	63
VI. 직매업체	68
1. 직매점 운영업체 참가조건	68
2. 직매점 운영업체 선정	70
3. 계약서	72
VII. 사후처리	82
1. 한국관 운영연장.....	82
2. 후속조치	84
3. 참가연장 관련 합의문	85
VIII. 타국가관 연출	91

I. '98 필리핀 엑스포

1. 필리핀 일반사항

- 면 적 : 300,400km²(한반도의 1.3배, 7,150개의 섬으로 구성)
 - 루손(104,688km²)섬과 민다나오(101,999km²)섬이 총 면적의 65%
- 인 구 : 71,899천명('96년말 추정치)
 - 메트로 마닐라(수도권) : 9,302천명('96년말 추정치)
- 언 어 : 공용어(타갈로그어), 상용어(영어)
- 종 교 : 로마 카톨릭 83%
- 전 기 : 220V/110V, 60Hz
- 화폐단위 : 페소(1페소=100센타보)
- 환 율 : US\$1=P 43.960('98. 1. 26일 현재)
- 1인당 GNP : 약 \$1,207.9('96년말 기준)
- 한국과 시차 : 1시간(홍콩, 대만과 같음)
- 근무시간
 - 관공서 09:00~17:00
 - 은행 09:00~17:00(실제 고객이용 가능시간 15:00까지)
 - 상 점 10:00~20:00
 - * 관공서, 은행, 국영기업체 및 사무실 등은 토요일 휴무.
- 공휴일(엑스포 기간중)
 - 노동절(Labor Day) : 5/1

- 독립기념일 (Independence Day) : 6/12
- All Saints Day : 11/1
- Bonifacio Day : 11/30
- 성탄절 (Christmas Day) : 12/25
- 리잘기념일 (Rizal Day) : 12/30
- 신정 : 1/1

○ 기 후

- 고온 다습 아열대성 기후
- 계절은 건기(11~4월)와 우기로 대별
- 연평균 강수량 2,030밀리미터
- 연평균 기온 섭씨 25도(무순섭 21도~33도)
- 습도 70~85%

○ 시장 개황

필리핀 시장은 인구가 7천만명을 넘어서고 국토가 30만 평방키로미터에 달하는등 잠재력은 있으나, 소득수준이 낮고 부의 불균형분배로 일반 소비 대중의 구매력이 낮은 상태에 머물고 있음

○ 소비특성

- 지방경제의 미발달로 소비는 주로 수도권과 일부 지방도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짐
- 소수의 고소득층(5~10%)은 최고급 최신 유행제품을 선호하며 잦은 해외여행을 통해 고급 브랜드제품을 구매하고 있음.
- 수도권의 경우 넓은 휴식공간을 갖춘 대형 쇼핑센터의 보급이 확산됨으로써 일반 소비자들은 냉방시설이 잘 갖추어진 쇼핑센터를 가족나들이 대상으로 활용하고 있어 충동구매 유발
-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저소득층의 경우, 주소비지출 대상은 음식, 의류임

2. 필리핀 엑스포 개요

엑스포는 BIE의 공인 여부에 따라 크게 공인엑스포와 비공인엑스포로 구별된다.

비공인엑스포는 지금도 여러 나라에서 개최되고 있지만 BIE의 협약은 회원국이 비공인엑스포에 국가관으로 참가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연유로 비공인엑스포는 전시 수준이나 규모가 공인엑스포에 비해 현격하게 떨어지며 대부분 국내행사 수준으로 치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필리핀 엑스포는 BIE 비공인 엑스포로서, 400년간의 식민통치를 벗어난 필리핀 독립 100주년 기념행사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필리핀은 1898년 6월 12일 Kawit에서 필리핀 독립을 선언하였으며 아시아 최초로 입헌 민주제를 탄생시켰다. 이에 따라, 필리핀 Fidel V. Ramos 대통령(당시)은 필리핀 독립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Central Luzon 지역내의 "Clark 경제 특구"에서 The Philippine National Centennial Exposition, 1998을 개최한다고 발표하였다.(1993년 10월 4일)

발표된 계획에 따르면, 박람회는 과학과 첨단 기술제품은 물론 미술, 문화, 무역, 산업, 환경관련 분야를 전시하게 되는데 필리핀 Central Luzon 지역과 그외 지역의 경제 발전에 촉매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청사진을 제시하였다. 또한, 관광객들의 방문지로서, Luzon 지역의 경제 중심부로 육성할 것을 계획하였다.

박람회 주제는 "1898년 독립정신의 재조명"으로서 과거 필리핀 민족들의 영광을 일깨우며 현재의 활동상을 자축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제시하는 것으로, 제 분야에서 인간 노력의 진수를 연출할 것을 계획하였다.

필리핀 정부는 가능한 다수의 참가자 유치를 위해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기업들도 초청키로 방침을 세웠다.

가. 개최목적

필리핀 독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필리핀의 역사와 문화, 발전상 및 미래

에 대한 꿈을 소개하고 전통적 우방국들과의 유대강화

나. 명 칭 : 필리핀 엑스포 '98(The Phillippine Centennial Exposition 1998)

다. 주 제 : 독립정신의 재조명, 과거를 통한 미래의 창출

(Rekindling the Spirit of 1898; Embrace the Past, Envision the Future)

라. 성 격 : 필리핀 독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역사·문화위주의 세계박람회
기구(BIE) 미공인 엑스포

마. 주 관 : The Phillippine Centennial Expo '98 Corporation

바. 기 간 : '98. 6. 6~'99. 1. 31(7개월)

사. 장 소 : 필리핀 Central Luzon 지역내 Clark 경제특구

아. 규 모 : 60ha(600,000S/M, 183,120평)

자. 구 성 : 5개지역으로 구분

- Mythical Island : 식민지 이전의 필리핀 소개(과거)
- Heritage Island : 16C초~19C말 스페인 식민시대 소개(근대)
- Global City : 필리핀관 및 국제관(현대)
- Millennium Plaza : 최신기술 및 미래사회, 산업소개(미래)
- Freedom Ring : 옥외 원형극장

차. 참가국 : 일본, 미국, 인도네시아, 한국, 영국, 싱가포르, 태국, 부르나이,
러시아, 중국 등 10개국

※ 외국관은 Global City내에 소재하였으며, 그 외에도 필리핀
관과 지방정부관이 소재함

Ⅱ . 한국관 참가

1. 참가목적

- 전통적 우방국인 필리핀과의 정치, 외교, 경제, 문화적 이해관계 강화를 통한 국가이미지 및 위상제고
-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필리핀 및 동남아 시장에서의 대 한국 우호 분위기 조성으로 지속적인 한국 상품시장 저변 확대
- 현지 주요 경제개발 프로젝트에의 우리기업 참여여건 조성

2. 한국관 참가추진 경위

- '96. 6 : 필리핀 전부통령 라우렐 방한, 외무부 차관 면담시 참가요청
- '96. 9 : 주 필리핀 한국 대사관을 통해 외무부에 한국 참가 요청
- '97. 4 : 필리핀 대통령, 한국참가 요청 서한
- '97. 8 : 통산부 참가방침 확정, 필리핀에 참가의사 통보(외무부 경유)
- '97. 12. 30 : 한국관 기본설계도 완성
- '98. 1. 12 : 자문위원회 개최
- '98. 3. 16 : 실시설계도 완성
- '98. 5. 21 : 한국관 시공
- '98. 6. 1 : 한국관 준공
- '98. 6. 6 : 한국관 개관

3. 추진 기구

가. 주 관 : 산업자원부

나. 시 행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다. 자문위원회

자문위원회는 '98. 1. 12일 개최되어 필리핀 엑스포 '98 주제에 부합하는 한국관 설계, 디자인 및 전시연출 기본방향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한국관에 전시할 전시장치물에 대한 아이디어를 도출하였다. 자문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분 야	성 명	경력사항	비 고
역사, 문화, 정치	서 회 건	조선일보사 출판국 부국장겸 월간조선부 부장 문화재전문위원 저서 : 박물관 대학 잃어버린 역사를 찾아서	전화 : 724-6131 팩스 : 724 6199
과학, 기술	박 성 래	외국어대 용인캠퍼스 부총장 문화재전문위원 한국과학사학회 회장 저서 : 한국과학사, 한국인의 과학정신 등	전화 : (0335)30-4003 팩스 : (0335)33-1708
디자인	이 영 혜	(주)디자인하우스 대표이사 월간디자인 대표	전화 : 2275-6151 팩스 : 2275 7884
주제, 설계, 전시 연출 등 전반	이 정 재	대전엑스포 전시담당 국장(전)	전화 : 420-1047
	김 창 로	통산부 수출과장	전화 : 500-2376 팩스 : 503-9438

4. 기본계획

가. 참가방향

○ 주 제 : 한국과 필리핀의 우정의 架橋

(Bridge of Friendship Between Korea and Phillippines)

- 국가 홍보관 형태로 참가
(KOREA-PHILIPPINES FRIENDSHIP PAVILION)
- 경제발전상, 문화의 우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세계선진국
으로 도약하는 한국의 위상 및 미래상 제시

나. 참가규모 및 위치

- 참가규모 : 310㎡(93.94평)
 - * 15.5㎡는 선물·용품, 한국토산품 등의 직매공간으로 조성, 활용
- 위치 : 국제관 구역(Global City)의 제 3Cluster

다. 한국관 구성

- 기본방향
 - 한국문화의 우수성 및 양국문화의 동질, 유사성 강조
 - 한·비간 역사적 유대관계 및 친밀성 강조
 - 한국경제의 발전상 및 국제적 위상 강조
- 전시장 구성
 - Identity Zone : 한국의 사계, 세시풍속, 민속인형, 청사초롱 등 한
국의 전통문화 이해를 도모.
 - Perspective Zone : 시대순(선사시대~2002월드컵)으로 우리문화의
발자취를 소개(*영상물 「Image of Korea」
상영).
 - Industrial Zone : 전기·전자, 컴퓨터, 자동차 및 에너지등의 한국
의 주요 산업과 과학기술 소개.
 - Friendship Zone : 한국과 필리핀간 유사성, 역사적 친밀도 등 묘사.
* 일명 한-필리핀간 우정의 가교 Zone

Ⅲ. 한국관 전시장치

1. 개요

“필리핀 엑스포 '98”의 개최목적과 성격에 비추어 한국관은 “한국과 필리핀, 우정의 가교(Bridge of Friendship Between Korea and Philippines)”를 참가주제로 하였다.

공간배분을 보면, 4개의 ZONE으로 전시공간을 배분 전시연출하였고, 기존 벽(화랑)과 섬식 전시공간의 복합 구성으로 전시면적 활용을 극대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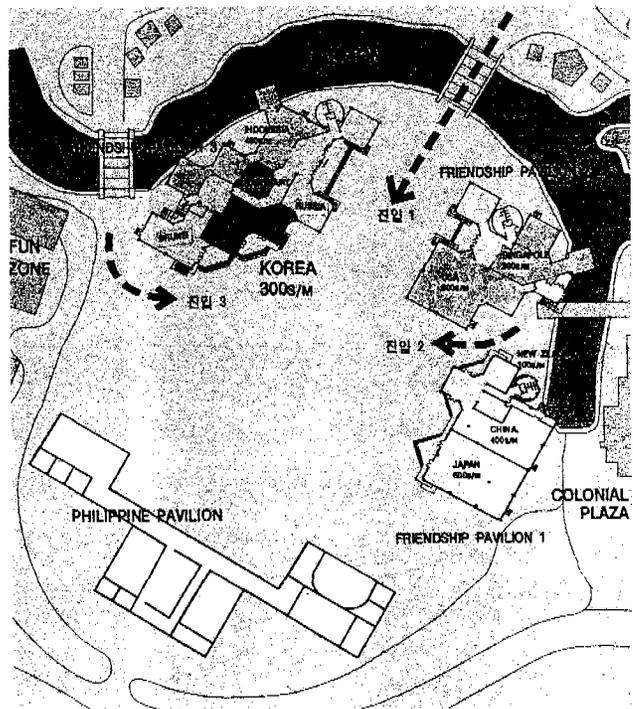
동선은 입구와 출구를 분리 설계하였으며, 동선의 형태와 혼잡을 고려하여 one way형 자유동선으로 계획하였다.

2. 한국관 설계

가. 한국관 위치

- 위치 : Global City내
Friendship Pavilion 3
- 주변 : 필리핀관 및 참가국가관
- 진입
 - 1 : Global City
중앙축 통로
 - 2 : FRIENDSHIP
PAVILION
1, 2 사이 통로
 - 3 : FRIENDSHIP
PAVILION
3 하단 통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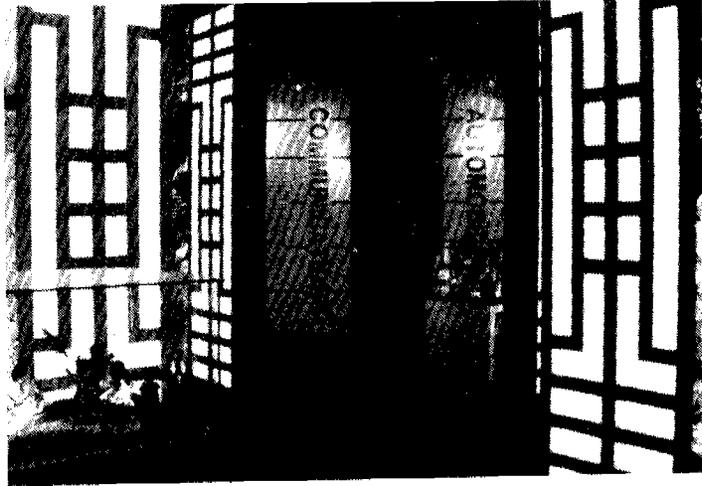
〈한국관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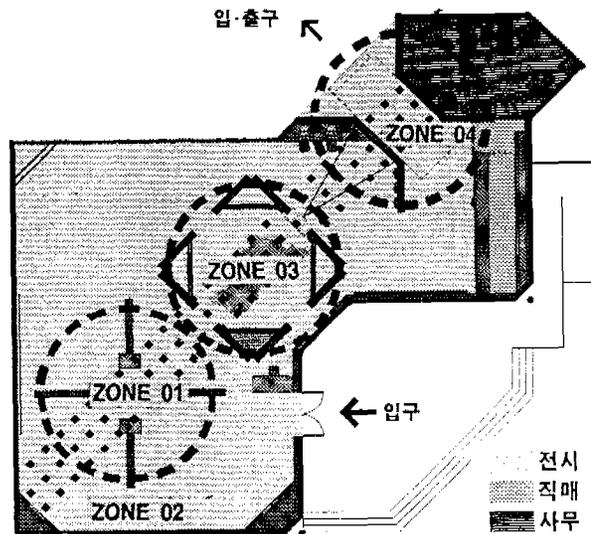
나. 한국관 내부

- 외부출입문 : 1개
- 한국관 규모 : 면적 315S/M
- * SERVICE AREA 부분
2.2 × 7M = 15S/M

〈한국관 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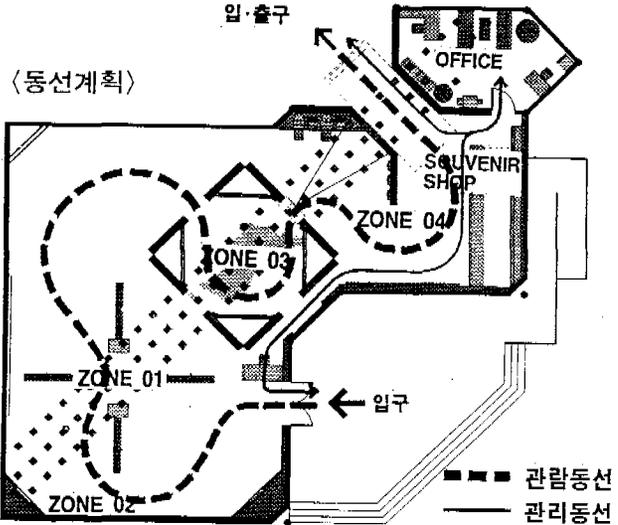
- 공간배분계획
 - 4개의 ZONE으로 전시공간 배분
 - 기존벽 (회랑) 과 십자 전시공간의 복합구성으로 전시면적 활용 극대화



〈공간배분〉

○ 동선계획

- 입구와 출구 분리
- 동선의 정체와 혼잡을 고려, ONE WAY형 자유동선으로 계획



라. 참가주제에 비취본 평면계획

- 1) FORECOURT : “태극, 오방색과 빗살무늬”
- 2) IDENTITY ZONE : “한국의 인상” (사계절)
- 3) PERSPECTIVE ZONE : “한국 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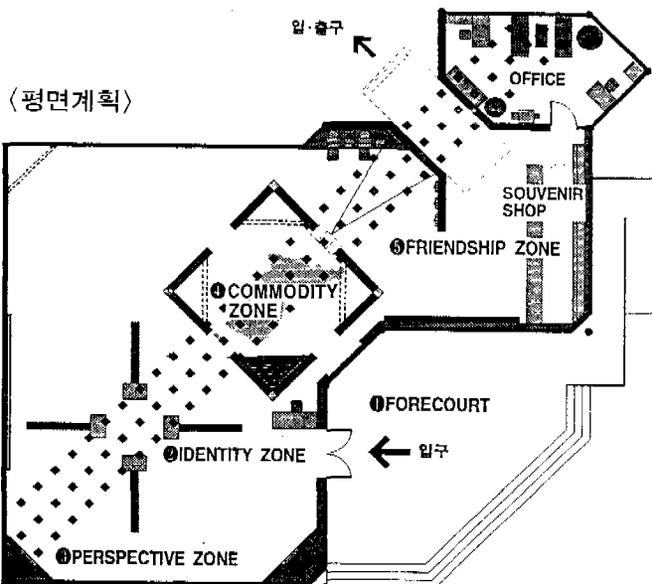
1억년전 공룡발자국으로부터 2002년까지

- 4) COMMODITY ZONE : “한국의 산업”

한국과학기술의 뿌리와 산업

- 5) FRIENDSHIP ZONE : “태양의 항로-해양 실크로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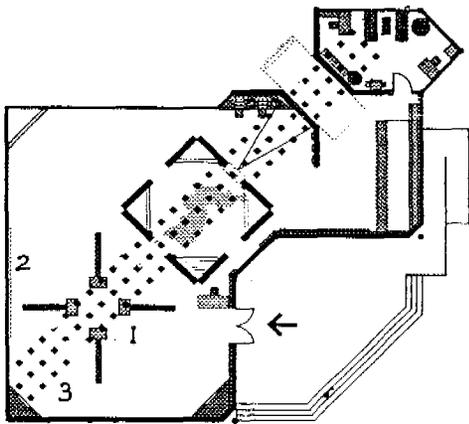
한국-필리핀 3,000년전 남북교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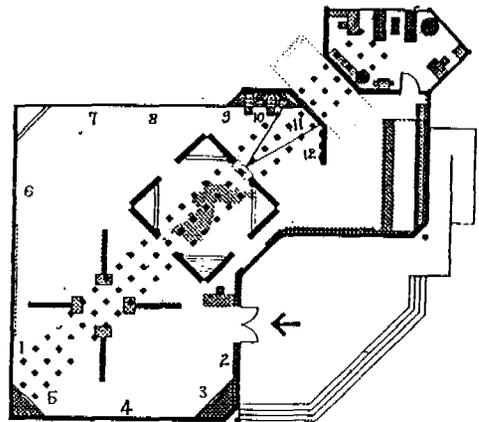
3. 전시연출 및 장치물

가. 한국의 인상 : IDENTITY ZONE

전 시 주 제	전 시 내 용	전 시 방 법
1. 완자분과 한국풍토·문화	- 완자문 방사 배치	조명내장
	- 사계절	C/T
	- 세시풍속 • 봄=씨름 • 여름=원두막+수박먹기 • 가을=농악 • 겨울=연날리기+썰매	인형연출
2. 석굴암	- 유라시아대륙 석각예술의 극치로서의 석굴암 진경 연출	사진패널
3. 청사춘롱	- 전시관 천정에 대각선 설치	조명있는 실물



〈한국의 인상〉



〈한국 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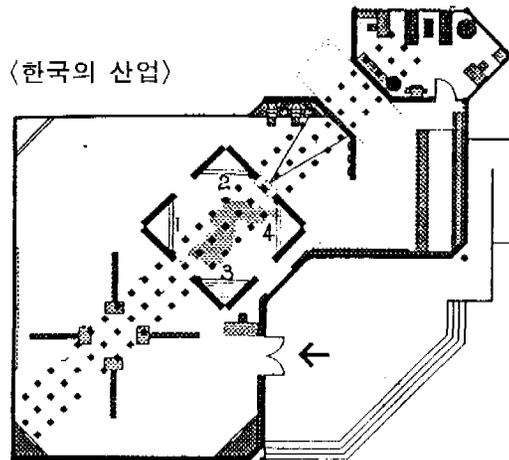
나. 한국 개관 : PERSPECTIVE ZONE

전 시 주 제	전 시 내 용	전 시 방 법
1. 한국의 질박한 아름다움	- 선사시대 빗살무늬	패턴시트 (전체벽)
2. 한국인. 국토	- 한국인의 얼굴 - 인공위성에서 본 한반도, 대동여지도	사진패널
3. 1억년전 한국	- 1억년전 공룡발자국 - 새 발자국 화석	사진합성 모형
4. 암각벽화	- 선사시대 한반도에서 고래잡는 모습	사진합성
5. 암사동선사주거지	- 암사동 선사주거지 소개 - 빗살무늬 토기, 탄화미(쌀농사)	사진합성 모형연출
6. 서울 600년	- 수선전도 〈600년전 풍수지리 컨셉의 도입〉 - 오늘의 서울 전경 - USOM - 6.25참전 - 교황방한 - 백남준 - 성트리오	사진합성
7. '88 서울올림픽	- '88 서울올림픽 경기장 - 문화 예술과 건축	사진합성
8. ASEM 2000	- ASEM 준비상황 소개	사진합성
9. 2002 WORLD CUP	- 2002년 월드컵 준비상황 등 소개	사진합성
10. 한글-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	- 훈민정음 - 한글배우기(CD-ROM)	사진 컴퓨터(PC 2대)
11. IMAGE OF KOREA	- 한국에 대한 이미지 영상	MULTIMEDIA- PROJECTOR
12. 진도	- 한국의 특이한 섬	들어다보기 (스코프)

다. 한국의 산업 : COMMODITY ZO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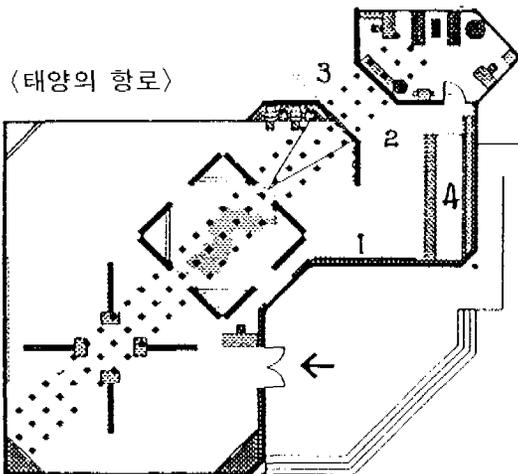
고대사회로부터 불려온 과학기술 관련 문화에 대한 분야별소개로, 수천년전 우리의 지혜로운 과학기술이 현재 우리나라 과학산업기술의 인프라가 되었으며, 또한 과거에 실크로드, 해양실크로드 등을 통하여, 오늘을 만들어 전세계에 골고루 전파되었음을 전시연출

전 시 주 제	전 시 내 용	전 시 방 법
1. 통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봉수대(세계최초의 디지털식 통신방법) - 금속활자와 세계최초로 인쇄시작 (직지심경, 계미자, 부구정광대다라니경) - 팔만대장경 - 에밀레종 - 무궁화통신위성, 초고속정보통신망, 핸드폰 	DEL-VISION 사진합성 실물모조
2. 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컴퓨터산업 - 전자산업 - 반도체(디지털회로) 256KDRAM 	사진합성 (반도체 CHIP 실물)
3. 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00년전 우차 소개 - 우리나라의 자동차 산업과 수출현황 - 국민차 소개 	사진합성 축소모형
4. 에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0년전 석빙고, 1,500년전 물레방아 - 남극세종과학기지 - 한국형경수로 및 원자력 발전 - 양수발전 	사진합성



라. 태양의 항로－해양실크로드 : FRIENDSHIP ZONE

전 시 주 제	전 시 내 용	전 시 방 법
1. 한국－필리핀 3천년전 남북문화교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실크로드 소개 － 6세기 백제의 필리핀 항로 － 백제장군 흑치상지(필리핀흑치족) － 쌀농사 전래 － 고인돌 － 돌하루방 － 닭싸움/온돌문화/홍삼문/숫대 － 우리와 유사한 콩요리 : 청국장(청국장지도 소개) － 삼죽오와 해의 신, 달의 신 	사진합성
2. 한국인에 보이신 필리핀과 한국의 민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루손섬 이후가모족 － 민다나오섬 티볼리족, 바고보족 － 란위도 의식 － 제주도 	사진패널
3. NATIONAL EMBLE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컨셉이 있는 태극기 소개(태극, 사괘) － 음·양 : 까마귀(해의 신), 두꺼비(달의 신) 	대문, C/T
4. 직매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산품, 민예품, 장신구 － 2002년 월드컵 기념품 	직매업체



4. 한국관 시공

가. 기본 방침

축박한 공사일정상 시공업체 선정방침을 다음과 같이 하였다.

1) 제한 경쟁입찰

- 자격제한 : 최근 5년내 EXPO 전시관 전시장차 시공실적 보유업체
- 제한사유 : 공사기간 촉박으로 건설한 유경험업체 선정 필요
- 업체선정 :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응찰업체순으로 시담하여
낙찰업체 선정

2) 계약조건

- 계약이행보증금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지체상금율 : 지체일당 계약금액의 1000분의 1
- 선금지급 : 없음(단, 공사가 계약기간을 60일이상으로 연장할 경우
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50을 선금으로 지급)
- 대금지급 : 준공검사후 14일이내 계약금액의 90% 지급
- 잔금지급 : 철거완료후 14일이내

나. 시공업체 선정

이에 따라 3개의 입찰 참가 업체중 시공업체선정을 위해 정해수 무역진
흥본부장이 현지 출장하고 다음과 같이 시공계약을 체결하였다.

1) 필리핀 EXPO 한국관 시공업체선정 입찰

- 입찰일시 : 1998. 3. 24(화) 10 : 00
- 장소 : 마닐라 무역관
- 입찰참가업체 : 3개사(Diamond AD, I.D.S. Int'l, PICO Int'l)

2) 필리핀 EXPO 한국관 시공업체 계약체결

- 일시 및 장소 : 1998. 2. 24(화) 18 : 30, 마닐라무역관
- 계약업체 : Diamond AD(금강기획)
- 계약금액 : US\$ 80,454(예정가 : US\$ 107,000)

다. 계약서

AGREEMENT

FOR THE CONSTRUCTION OF THE KOREA PAVILION OF THE PHILIPPINE CENTENNIAL EXPOSITION 1998

AGREEMENT made as of the 24th day of March 1998

BETWEEN the Owner :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KOTRA)

Address : 159, SAMSUNG-DONG, KANGNAM-KU, SEOUL, KOREA

AND

The Contractor : DIAMOND AD. LTD.

Address : Boryung Bldg., 66-21, Wonnam-Dong, Chongro-Ku, Seoul Korea 110-750

The Architect : EXHIBIT AND ENVIRONMENTAL DESIGN ASSOCIATES

Address : RM. 607, GEO-YANG BLDG, CHONGRO-KU, SEOUL, KOREA

The Owner and the Contractor agree as set forth below :

ARTICLE 1 THE WORK

The Contractor shall :

- (a) perform all the Work required by the Contract Documents for the KOREA PAVILION, PHILIPPINE EXPO'98, and
- (b) do and fulfill everything indicated by this agreement.

The realization of the Work under this agreement shall be done in accordance with the international standards of good construction.

ARTICLE 2 THE CONTRACT DOCUMENTS

The Contract Documents referred to in Article 1 consist of :

- (a) This Agreement

- (b) Specifications
- (c) Drawing(s) for Korea Pavilion, PHILIPPINE EXPO '98,
- (d) The regulations of the PHILIPPINE EXPO '98, as well as PHILIPPINE on construction
- (e) PHILIPPINE Regulations on health, security and hygiene at the place of work
- (f) All addenda issued prior to and modifications issued after execution of this Agreement.

These form the Agreement, and all are as fully a part of the Agreement as if attached to this Agreement or repeated herein.

All works, even if not indicated in these documents, but which could be considered as necessary to the normal procedure of the contract, are considered a part of the Agreement. Accordingly, the Contractor shall not claim any extra payment. Nevertheless, the Contractor is obliged to point out to the Architect all the works considered useful, including that which is not mentioned in the documents already listed.

In addition, the fulfillment of the Agreement is governed by a set of prevailing laws and plans in the PHILIPPINE EXPO '98 Authorities, in particular insurance, tax, social questions, salaral matters, labor protection, security and hygiene, personnel and registration.

ARTICLE 3 TIME OF COMMENCEMENT AND COMPLETION

The Work to be performed under this Agreement shall be commenced not later than the 1st day of April 1998 and completion shall be achieved not later than by the 30th day of April, 1998 ; the Owner shall

try to provide 'Korea Supply items' well before the date of work completion.

However, if the Owner fails to supply 'Korea Supply items' in due time, the Contractor is nevertheless bound to install the 'Korea Supply items' even after the date of work completion.

When the work is completed the Contractor shall officially notify the Owner who shall organize a meeting with the Architect and the Contractor to conduct inspections and issue a final certificate.

The date of completion of the Work is the date of certified by the Owner through the Architect and when the construction is completed in accordance with the Contract Documents.

If the Contractor fails to complete the Work within the time specified in this Article, the Contractor shall pay the Owner the sum of 5% per calendar day of delay. In no case the work may be delayed after 5 calendar days from the scheduled finalization of the Work. Reaching this limit, the Owner will be able to cancel the Contract with the right to indemnification for damage and loss.

ARTICLE 4 CONTRACT PRICE

The contract price is for the lump sum of US \$ 80,454 (Eighty thousand four hundred fifty four) on the rental base. The Contract Price includes the followings ;

- (a) Execution of the Work in accordance with the Contract Documents approved and signed by both parties :
- (b) The cost of the architectural inspection, on the part of the Contract

-tor, done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and provisions of the PHILIPPINE EXPO '98 Authorities

- (c) The quality tests of the PHILIPPINE materials, and automatic control tests of such as the mechanical, electrical and fire-fighting equipments, etc.
- (d) The cost of water, electrical energy, gas, etc., consumed during the execution of the Work
- (e) The payment of all types of taxes, receipts, insurance premiums, etc., which are to be paid in PHILIPPINE Currency by reason of the realization of the Work under this Agreement, including the premiums in accordance with the special regulations of the PHILIPPINE EXPO as well as the other costs related with the securing of the permits and the required licenses during the execution of the Works.
- (f) The cost of restoration of the plots to their original state including the work for dismantling, demolishing construction and other structures and waste disposal in accordance with the regulations of PHILIPPINE EXPO '98

ARTICLE 5 PAYMENT

Based upon applications for payment submitted to the Owner by the Contractor together with the certificates for payment issued by the Architect, the Owner shall make payment in accordance with the following schedule :

First payment : (90) % of the Contract Price payable not later than

14 days after completion of work with the certification of Architect.

Final payment : the balance of the Contract price payable not later than 14 days after completion of restoration of the original state and waste disposal with the certification of PHILIPPINE EXPO '98 Authority.

ARTICLE 6 SECURITY

The security given by the Contractor to the Owner for the purpose of ensuring the due and proper performance of the Contract shall be in the form of an unconditional undertaking or certificate in a form approved by the Owner and given by a bank approved by the Owner.

The amount of the performance bond shall be 10% of the Contract Price, that is, US\$ 8,045 (Eight thousand forty five) which shall be submitted to the Owner within ten days after the signing of this Agreement. The term of the security ("Performance Bond") shall be up to May 31, 1998.

ARTICLE 7 DEFECTS LIABILITY AND WARRANTY

The defects liability and the warranty period shall commence on the day of the completion of the Work and shall be terminated within 5 days after closing date of Korea pavilion.

ARTICLE 8 WORK PRECAUTIONS

Given the strict work period, in the event that the Contractor shows insufficient building activity in order to comply with the fixed period,

excluding cases of force majeure, the Owner shall oblige the Contractor to increase his manpower and take all necessary measures to make up for delay.

If this recovery is shown to be unsatisfactory, the Owner shall have the formal right, without the need for any judicial procedure, to allow another third party contractor to continue with construction on behalf of and to the risk of the failed Contractor, using the latter's equipment and materials which the Contractor has left on the site.

All the cost and expenses that result from these measures for its replacement shall be deducted from the amount owed to the Contractor.

ARTICLE 9 INSURANCE

- (a) The Contractor shall defend, consider innocent and indemnify the Owner, its delegates, representatives, employees and agents from and against all kinds of losses, costs, damages, expenses and reclamation of any nature, that may occur during or as a result of the performance under this Agreement.
- (b) Without being considered a restrictor to the clause(a) (above), the Contractor shall provide an insurance to cover accidents of any personnel involved at the work, as well as its civil liability towards a third party against all physical or material damage caused, and/or by the fulfillment of the Agreement, be it through his own errors or those of another person directly or indirectly appointed by him.
- (c) The Contractor should subscribe to the additional insurance as required by the regulations of PHILIPPINE EXPO '98 and PHILIPPINE for the construction of Korea Pavilion.

This insurance shall be written for including but not limited there-
of any items indicated by the following examples:

- 1) Accident at work Insurance
 - 2) Medical insurance for all workers
 - 3) Civil Liability insurance
 - 4) Contractor's All Risks insurance
 - 5) Extra-contractual Civil Liability insurance
- (d) Before April 1st, 1998, the contractor shall provide the confirma-
tion of the insurance valid for carrying out construction work in
PHILIPPINE to the Owner. This confirmation comes from the in-
surers in which reference is made to the insurance coverage neces-
sary in the clause(c). The contractor has to ensure that the Sub-
Contractors are also covered according to the conditions in the
clause(C).
- (e) The confirmation of insurance issued by the insurers must include
a clause stipulating that all changes, and/or cancellation to with-
drawal of the insurance policy or policies is/are put into effect
after a period of two weeks from the day of notification which is
counted from the date of the postal stamp of the registered letter
directed to the Owner by the insurers.

ARTICLE 10 MAINTENANCE

The Contractor must fully insure the management of its obligations
hereunder and accordingly he shall take on all liabilities related to the
construction process, the legal stipulations and the regulations, for the
Owner as well as the third parties and the adjacent sites. In the event

of an accident provoked by the Contractor or his temporary sub-contractors, the repair costs for damages shall be charged to the Contractor.

The Contractor is the only person responsible for infraction of the plans and building licence, as well as orders concerning the cleanliness of the public thoroughfare at its own cost.

In the same way, the Contractor is the only person held responsible for the carrying out of the construction including any and all the smallest of errors. The Contractor shall make arrangement for the perfect maintenance of the construction which he must account for until the final approval by the Owner is given.

Any deterioration resulting from carelessness or caused by the Contractor or his personnel, shall have to be repaired at its cost.

This also applies to damages caused by inclemency or fire. He alone shall account for the loss resulting from these damages together with the consequences of embezzlement and theft.

ARTICLE 11 APPROVAL OF MATERIALS

All materials used shall be new and of good quality. They shall be applied with all the necessary care in order to obtain an absolutely flawless construction. All materials rejected by the Architect shall have to be removed immediately from the construction site.

The materials shall be put into storage in order to avoid any deterioration in quality.

The Owner shall have the right to reject any materials at any time, even after the second inspection, when the materials show the signs of

defect that escaped unnoticed during the first examination, if these materials are of a nature arousing suspicions concerning the solidity of the contract as well as the correct functioning of the installations.

ARTICLE 12 MODIFICATION

Whatever modification of the Work and/or of the stipulations upon that projected and agreed, shall be expressly authorized in writing, with the signatures of the representatives of the Contractor and the Owner, owing to be assigned in said document if the modification changes the price of the Work and/or the stipulated time limit.

The time of completion of the Work in the Article 3 under this Agreement may be modified by the consent of the parties to this Agreement in the event of following :

- (a) Increase of the work, which will be priced more than 5% of the Contract price.
- (b) Reason of force majeure (Act of God)
- (c) Total and complete strike in the construction sector, partial and regional strike not being considered, and which can not be attributed to the Contractor. Climatic conditions, including rainfall, etc., shall not be considered reasons as for the extension of completion time.

ARTICLE 13 TERMINATION OF AGREEMENT

These are causes of termination of the Agreement

- (a) The total or partial non-fulfillment of all or some of the Agreement.
- (b) The definitive or temporary suspension of the works or the accumulated delay of one time limit greater than one quarter (25%) of

the planned time limit for the execution of the work by the Contractor, except in those assumed especially marked on this Agreement.

- (c) Declaration of bankruptcy or suspension of payments on the part of either the Contractor or the Owner.
- (d) Non-compliance, by the Contractor, with his obligation regarding safety on the site.

Upon the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by any reason(s) aforementioned, the non-breaching party shall have the right for the indemnification of damages and losses, if any.

Notwithstanding the preceding paragraphs, in case of the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caused by the Owner, the contractor shall have the right to claim the amount of damages which shall be limited to and not exceed the values of the works completed to the date of termination.

ARTICLE 14 ARBITRATION

This Agreement shall be governed by and construed and enforced with the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without regard to conflict of laws principles of the Republic of Philippines. Any controversy, claim or dispute shall be resolved in good faith by negotiation between the parties, and if the dispute is not resolved by negotiation, either party may initiate an arbitration in the Republic of Korea under the Rules of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and each party agrees to abide by the result of the arbitration.

ARTICLE 15 SUB-CONTRACTORS

Sub-contractors of Contractor could be accepted only in specialized fields & with the consent of the Owner.

The Contractor shall give to the Sub-Contractor nominated, and in sufficient time to prevent delay being occasioned in the progress of the Work under the Contract, all necessary directions and cooperation regarding the work performance.

ARTICLE 16 CONFLICT OF CONTRACT DOCUMENTS

In the event of any conflict between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and that of any other Contract Documents, i. e. instruction document, specifications and drawing(s), the provisiond of this Agreement shall prevail.

This Agreement entered into as of the Contract Day as indicated in the first line of this Agreement.

OWNER

CONTRACTOR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KOTRA)

DIAMOND AD. LTD

signed by HAE-SOO CHUNG

signed by CHAI-IL JANG

its VICE PRESIDENT & EXECUTIVE
DIRECTOR FOR TRADE PROMOTION

its General Manager
for Overseas Business Div.

필리핀 엑스포 '98 한국관 전시장치 설계 및 감리 용역 계약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갑”이라 칭함)와 (주)환경디자인연구소(이하 “을”이라 칭함)간에 필리핀엑스포 '98 한국관(이하 “한국관”이라 칭함) 전시장치 설계 및 감리 용역에 관한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 1 장 일반조항

제 1 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1998년도 2월 25일부터 1999년도 1월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되는 필리핀 엑스포 '98(이하 “엑스포”라 칭함) 한국관 운영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우수한 한국관 전시장치 설계도 제작 및 이를 토대로 이루어지는 국내 장치물 제작과 현지 전시장치공사의 완벽한 감리(이하 “설계 및 감리”라 칭함)가 제반 절차에 따라 차질없이 종결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계약 대상)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을”은 다음 각호의 용역을 “갑”에게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갑”은 “을”에게 소정의 설계 및 감리비를 지급한다.

1. 한국관 전시장치 설계도 제작
2. 한국관 국내제작분 장치물의 감리
3. 한국관 현지 장치공사 감리
4. 기타 위 3개 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갑”이 요청하는 사항

제 3 조(용어의 정의)

본 계약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설계도

필리핀 엑스포 '98 당국의 규정에 따른 한국관 전시장치와 부대 시설, 그리고 국내에서 제작되는 전시장치물에 대한 기본설계도 및 실시설계도를 뜻한다.

가. 기본설계도

실시설계의 기본이 되는 다음 각호의 설계도 및 기타 엑스포 당국의 규정에 따른 예비승인을 득하기 위해 구비되어야 할 제반 부속서류를 말하며 통상적인 계획설계는 기본설계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 1) 투시도 또는 조감도, 평면도, 입면도, 일반단면도
- 2) 한국관 축소 모형
- 3) 설계설명서(전시연출 세부계획과 전시공간 및 장치물 스케치 포함)
- 4) 공사비 계산서

나. 실시설계도

국내에서의 장치물 제작을 포함한 한국관 장치공사에 실제로 사용되는 다음 각호의 설계도 및 기타 엑스포 당국의 규정에 따라 엑스포 당국으로부터 설계도 최종 승인을 득하기 위해 구비되어야 할 제반 부속서류를 말한다.

- 1) 투시도, 평면도, 입면도, 일반단면도, 설비도면, 부대시설 설계도
- 2) 공사시방서, 설계설명서
- 3) 국내 제작 장치물을 포함한 공사비 명세서

2. 감리

실시설계도 및 공사계약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시공계획 및 공정표 검토
- 나. 시공도 등의 적합성 검토
- 다. 공사도급계약의 협력
- 라. 설계변경사항의 검토
- 마. 구조물의 위치와 규격 및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
- 바. 주요기자재의 적합성 검토
- 사. 시공사가 제시하는 시험성과표의 검토 및 확인
- 아. 누수·단열 및 방습에 관한 시공성 검토
- 자. 공사의 확인
- 차. 공사비 지불 심사·확인
- 카. 공사감리 완료 보고

3. “갑”의 현지 대표

한국관 미설치 기간중에는 필리핀 마닐라 무역관장 혹은 “갑”이 별도로 지명하는 인사를 “갑”의 현지대표로 하며, 한국관 개관 후에는 한국관 관장을 지칭한다.

4. “을”의 실무자

다음 각호 중 하나의 자격을 구비한 자로서 본 계약상 “을”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을”의 업무추진 실무직원을 지칭한다.

가. 4년제 대학(이하 “대학”이라 칭함)의 건축, 설계, 디자인 관련 학과를 졸업하거나 관련 자격 소지자로서 전문 직무 경험 7년 이상인 자

나. 대학 또는 전문대학 관련학과 조교수 2년 이상 경력 소지자

다. 기타 “갑”이 “을”의 실무자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5. 현지

엑스포가 개최되는 필리핀 마닐라를 의미한다.

제 2 장 설계도 제작

제 4 조(설계지침)

1. “을”은 “갑”이 제시하는 엑스포 참가 추진 기본 계획 및 설계지침과 “을”이 제출하는 설계시안(이하 “설계시안”이라 칭함)을 토대로 “갑”과 협의하에 “갑”의 의도가 충실히 반영된 설계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을”은 엑스포 당국이 제정한 각종 규정 및 현지 관련 법규 등에 부합하도록 설계도를 작성하여야 하며 “을”의 요청에 따라 “갑”은 이에 필요한 제반 자료를 제공한다.

제 5 조(설계도 작성 기준금액)

1. “을”은 “갑”이 한국관 장치비로 책정한 예산 중 장치 공사비 및 장치물 제작비의 합산액을 설계도 작성 기준 금액으로하여 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한국관 전시장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2. 본 계약 체결시 한국관 장치 공사 및 제작 장치물의 설계도 작성 잠정 기준액은 ₩220,000,000으로 하며, 기준금액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을”은 “갑”의 통보에 따라 변동된 기준액을 본건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을”은 “갑”에 의한 설계대상 추가, 설계 변경, 설계도 작성 기준금액 변경 등에 따라 전기 1항의 수행에 차질이 우려되는 경우 지체없이 “갑”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 “갑”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6 조(설계도 작성 및 제출)

“을”은 본 계약에 따라 제작한 설계도 10부를 다음 일정에 따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추가 소요부수에 대해서는 “갑”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제출키로 한다.

단, “을”은 “갑”의 설계도 확정 승인 후 엑스포 당국의 승인 및 현지 시공을 위해 필요시 영문 설계도 10부를 “갑”이 지정하는 기일내 별도로 제출한다.

가. 기본설계도 : '97년 12월 30일 이전(한국관 모형은 '97. 12. 30일 이전)

나. 실시설계도 : '97년 1월 20일 이전

제 7 조(설계도 제작 관련 현지 출장)

1. “을”의 대표 설계자는 설계도 제작을 위한 현장답사, 설계도 제출, 현지 물가조사, 관련 자료 수집, 엑스포 당국과의 한국관 전시 장치 설계 관련 제반업무 협의, 현지 건축사 선정 등을 목적으로 “갑”의 요청에 따라 현지 출장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출장경비는 “갑”이 부담한다.
2. “을”의 대표 설계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현지 출장을 할 수 없는 경우는 “갑”의 승인을 얻어 “을”의 실무자로 하여금 그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 8 조(“을”의 현지출장 경비 지급)

1. 본 계약에 의한 “을”의 대표 설계자 해외 출장 경비는 출장 당시 시행되고 있는 “갑”의 “국외여비 규정”의 2직급에 준하여 항공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며, “을”의 실무자에 대해서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해당 출장경비를 지급한다.
단, 현지체재 기간이 30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위 규정 제16조의 3항을 적용한다.

(3직급 대우)

- 1) 대학의 건축, 설계, 디자인 등 관련학과를 졸업하거나 관련 자격 소지자로서 직무경험 5년 이상인 자
- 2) 대학 및 전문대학 전임강사 2년 이상의 경력 소유자
2. 전기 1항 요건에 미달하는 “을”의 실무자에 대한 여비지급 기준은 “갑”이 정한다.
3. 본 계약에 의한 출장비는 매회 1인에 한하여 지급하며 현지 감리 업무의 경우도 동일한 원칙을 적용한다.

제 9 조(설계도 검토 및 심의)

1. “을”은 제6조의 기본설계도가 완성된 후 지체없이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위 승인이 있을 후 동조의 실시설계도를 작성하는 것으로 한다.
2. “갑”은 제6조 설계도의 제작 완료 단계와 실시설계도 작성 과정에서 “갑”이 의도하는 바가 설계에 충실히 반영되었는지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설계 내용을 수시로 검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은 “갑”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자료 제출 및 설명 등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3. “갑”의 설계도 검토 결과, 수정 또는 보완을 요하는 사항이 지적 될 경우 “을”은 5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펼한 후 “갑”의 재검토를 받아야 한다.

제 10 조(설계도 변경 및 수정)

1. “을”은 “갑”의 합리적인 요청에 따라 설계도를 변경 또는 수정하여야 하며 이는 실시설계도 제작 완료 이후에도 적용된다.
2. “갑”은 “을”에 의한 현지에서의 전기 1항 설계도 변경 또는 수정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을”의 부담으로 현지 건축사에게 의뢰할 수 있다.

제 11 조(설계내용 설명)

1. “을”은 “을”이 작성한 설계도에 의거 장치물 제작 또는 공사 계약을 위한 입찰이 실시될 경우 “갑”의 요청에 따라 입찰에 참석하여 설계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2. 전기 1항의 입찰이 현지에서 실시되거나 또는 현지에서의 설계내용 설명이 요구되는 경우 “을”은 “갑”의 요청에 따라 현지출장은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경비지급에 대하여는 제8조를 적용한다.

제 12 조(설계도 저작권)

1. 본 계약에 의거 작성된 도면, 서류 및 자료에 대한 저작권 등 일체의 권리는 “갑”에 귀속되며 본 용역과 관련된 특허권, 저작권 침해 등의 문제 발생시 “을”은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2. “을”은 본 용역 수행 중 또는 완료 후 본 용역의 내용 및 자료에 관한 기밀을 “갑”의 승인없이 타인에게 공개해서는 아니된다.

제 13 조(현지 건축사 선정)

1. “을”은 본 계약의 목적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갑”의 요청이 있을 경우 현지 건축사와 업무제휴를 하여야 한다.
2. 전기 1항에 의거 “을”이 현지 건축사와 계약을 체결키 위하여는 사전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상기 업무제휴와 관련하여 제공되는 현지 건축사의 용역에 대한 대가는 건축사 업무 및 보수기준 제20조 제4항을 원용하여 “갑”이 부담한다. 그러나 위 기준에서 설정한 지급 금액의 최저한도는 적용치 아니할 수 있다.

제 14 조(현지 건축사와의 계약 내용)

1. “을”이 현지 건축사와 업무제휴 계약을 체결하게 될 경우 현지 건축사 용역에 다음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 가. 한국관 전시장치와 관련하여 엑스포 당국의 규정 및 현지법규 또는 관례상 현지 건축사에 의해 제공되어야 하는 용역
- 나. “을”이 작성한 설계도를 엑스포 당국에 제출하기 전에 현지 제 규정 및 법규에의 부합여부를 검토하는 용역
- 다. 기타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역
2. 현지 건축사와의 계약 체결 이전에 본 계약의 충실한 이행을 위하여 “갑”이 요청하는 다른사항이 있을 경우 “을”은 이를 계약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 3 장 시공감리

제 15 조(시공감리자 현지 출장)

1. “을”의 대표 설계자는 한국관 시공일 이후부터 개관후 3일까지 한국관 전시장치 공사 감리 및 현장 감독을 위하여 현지에 체재하여야 하며 기간 중 “을”의 대표 설계자 출장 경비는 “갑”이 부담하되 항공운임은 왕복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
2. “을”은 “을”의 실무자로 하여금 전기 1항의 업무를 대행토록 할 수 있다. 단, 감리자를 감리업무 수행 중간에 교체하는 경우 추가되는 항공운임은 “을”이 부담한다.
3. 출장경비 지급과 관련하여 상기 각호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제 8조를 준용한다.

제 16 조(감리자 출장계획서)

1. “을”은 제18조에 따른 감리자 출장계획서를 한국관 현지 전시장치 공사 시공일 30일 전에 “갑”에게 제출하여 “갑”의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2. “을”은 부득이한 사유로 “갑”으로부터 승인을 득한 감리자 출장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에 대하여 “갑”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 17 조(감리일지)

1. “을”은 “을”이 감리하는 장치물 국내제작 추진 현황을 “갑”이 수시로 파악할 수 있도록 감리일지를 기록하여 최소한 7일 1회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을”은 “을”이 감리하는 현지 장치공사 추진 현황을 “갑”이 수시로 파악할 수 있도록 감리일지를 기록하여 최소한 7일 1회 “갑”의 현지대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18 조(감리자 근무수칙)

1. 현지 파견 감리자는 “갑”의 현지대표의 총괄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다.
2. 현지파견 감리자는 “갑”의 동의없이 현지를 이탈할 수 없으며 현지 무단 이탈시 “갑”은 “을”에 지급되는 최초 1개월 기준 1일 체재비의 3배를 이탈일 수에 따라 징구하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서 공제한다.
3. “갑”은 현지 파견 감리자의 무단 이탈시 이탈 기간 동안의 감리업무를 현지 건축사 또는 기타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동 위임에 따른 비용은 “을”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공제한다.

제 19 조(감리업무의 위임)

“을”은 “갑”의 사전동의를 얻어 현지 건축사에게 감리업무를 잠정적으로 위임할 수 있으며, “갑”은 위임기간 동안 현지 파견 감리자에 대한 당해 일비, 숙박비, 식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제 4 장 설계 및 감리비 지급

제 20 조(설계 및 감리비)

1. 본 계약에 의거 “을”에게 지급되는 설계 및 감리비는 계약 체결 시기가 속한 연도의 <정부예산 편성기준 시설부대경비> 건축부문 요율 3종(복잡, 전시시설)을 적용하되 기타부대비는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 기존 실물의 단순모형 제작에 대하여는 실시설계비와 감리비만을 지급한다. 다만 “을”이 제출한 설계도가 모형 제작에 충분치 않다고 “갑”이 판단할 경우 “갑”은 실시설계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며 감리를 할 필요가 없거나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 21 조(설계 및 감리비 산정기준)

설계 및 감리비 산정기준은 “을”이 설계 및 감리를 한 한국관 전시장치 공사의 국내장치물 제작비 및 현지 장치 공사비의 원화 환산액을 합산한 공사 도급액으로 한다.

그러나 단순 전시장치물 및 영상기자재의 구입 또는 입차비와 철거비 및 부가가치세는 공사도급액 산정에서 제외한다.

제 22 조(설계 및 감리비 산정 가기준액 및 잠정 설계 및 감리비)

1. 공사 도급액 확정 이전의 설계 및 감리비는 제5조 2항의 한국관 장치 및 국내 제작 장치물의 설계도 작성 잠정 기준액 ₩220,000,000을 가기준액으로하여 산정한다.
2. 본 계약 체결시의 잠정 설계 및 감리비(이하 “잠정 설계 및 감리비”라 칭함)는 ₩19,329,200으로 한다.

제 23 조(현지 한국관 장치 공사비의 원화 환산)

본 계약의 현지 장치 공사비 원화 환산의 기준은 “갑”이 공사비 지급을 위하여 공사대금을 현지로 송금한 날 외환매입(비화기준)에 충당된 원화 누계치로 한다.

제 24 조(설계 및 감리비 지급 방법)

본 계약에 의한 설계 및 감리비는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거 “을”의 청구에 따라 국내에서 원화로 지급한다. 다만 “갑”의 자금사정이 여의치 못할 경우 “을”과 협의후 지급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1. 1차 설계 및 감리비 지급

기본설계도 확정후 14일 이내에 제22조에서 정한 잠정 설계 및 감리비의 25퍼센트(%)를 지급한다.

2. 2차 설계 및 감리비 지급

실시설계도 확정후 14일 이내에 제22조에서 정한 잠정 설계 및 감리비의 39퍼센트(%)를 지급한다.

3. 3차 설계 및 감리비 지급

한국관 개관후 30일 이내에 21조를 적용한 총 설계 및 감리비에서 1차, 2차 지급분을 공제한 잔액을 지급

제 5 장 계약의 해지, 위약 및 보증

제 25 조(신의성실의 의무)

1. “갑”과 “을”은 엑스포 참가가 국가적 중대 사업임을 감안하여 상호 긴밀한 협조로 본 용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을”은 본 용역이 절대적인 완벽성이 요구되고 유예할 수 없는 사업이므로 본 계약서상의 조건이나 기타 이해관계 등을 이유로 사업추진을 지연, 기피,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26 조(계약의 해지)

1. 본 계약은 다음과 같은 사유에 따라 자동적으로 해지되며 이 경우 “갑”은 계약 대상이 “을”에 의해 실제 이루어진 정도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갑”이 정하는 보상액을 결정하여 “을”에 지급한다.
 - 가. 엑스포 당국에 의한 엑스포 개최 취소
 - 나. 정부 방침에 의한 엑스포 참가 취소
2. “갑”은 다음과 같은 사유에 따라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으며 “갑”이 입은 손해(기지금급, 용역 대체비용 등)에 대하여 “을”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보증금은 “갑”에 귀속된다.
 - 가. “을”의 계약이행에 대한 태만 또는 계약기간 중의 부정행위 등으로 본 계약 목적 달성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갑”이 판단하는 경우
 - 나. “을”이 현실적으로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것으로 “갑”이 판단하는 경우
3. “을”의 일방적 해약시 “갑”은 “을”에 대한 기지급액을 환수하고 계약 보증금은 “갑”에 귀속시키며 “을”은 동 해약으로 발생한 “갑”의 모든 손실에 대하여 “갑”의 결정에 따라 배상할 의무를 갖는다.

제 27 조(위약 및 지체상금)

1. “을”은 위약 및 과실(설계 및 감리상 하자 포함)로 발생한 “갑”의 모든 손실에 대하여 “을”은 “갑”의 청구에 따라 배상하여야 한다.
2. “을”은 설계도 제출기일의 지연에 대하여 지체일수 1일당 설계 및 감리비의 2.5/1000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배상하여야 한다.
3. 전기 1항 및 2항의 배상을 위해 “을”은 “갑”의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배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동 배상금의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갑”은 “을”에게 지급할 설계 및 감리 보수에서 공제할 수 있다.

4. 전기 2항의 지체상금은 용역수행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지체되었다고 “갑”이 인정한 경우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산정한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경우

나. “갑”의 책임으로 용역이행이 지연되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다. 기타 “을”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해 지체되었다고

“갑”이 판단한 경우

제 28 조(과다지급분의 환불, 변상)

“을”은 제 31조의 감사 결과 “을”에 대한 설계 및 감리비가 과다지급된 것으로 판정된 경우와 또는 변상 판정이 내려진 경우 “갑”의 요청에 따라 이의없이 7일 이내에 과다지급액의 환불 및 변상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제 29 조(계약보증금)

1. “을”은 본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잠정 설계 및 감리비의 10/100 해당금액을 계약보증금으로 계약 체결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2. 전기1항의 현금 대신 “갑”을 피보험자로 하고 보증금액 이상의 정액보상의 특약조항이 있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보증기간은 엑스포 종료후 30일이 경과한 날까지로 한다.
3. 전기 2항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은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을”이 납부한 보증금은 보증기간의 경과 후 “을”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 6 장 효력발생, 분쟁해결

제 30 조(효력발생)

본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제 31 조(계약의 종료 및 소멸)

본 계약상 “을”의 설계 및 감리 의무는 한국관 완공증명 또는 점유 허가서 발급으로 종료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계약의 효력은 이행 보증보험기간 또는 “갑”의 일체 행위에 대한 감사권을 갖고 있는 부서 또는 상부기관의 관련 감사 종료시까지 계속 유지키로 한다.

제 32 조(하도급 및 채권 양도 금지)

“을”은 본 계약에 의한 설계업무와 감리업무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거나 본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지 못한다.

제 33 조(해석상 차이)

“갑”과 “을”간에 본 계약 약정사항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시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제 34 조(분쟁해결)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으로 인하여 문제가 제기될 경우 “갑”과 “을”의 합의에 따르며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여 야기되는 분쟁은 국내법에 의해 해결하기로 하되 관할 법원은 서울지방법원으로 한다.

제 35 조(계약서 작성)

본 계약을 위해 “갑”과 “을” 및 “을”이 날인한 계약서 2통을 작성, 본 계약 당사자가 각각 1통씩 보관하며 공히 정본으로 한다.

1997년 12월 12일

“갑”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59
상 호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무역진흥본부장 정 해 수 (인)
(대리)전시사업처장 박 종 남

“을”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51-8
상 호 : (주)환경디자인연구소
대 표 : 유 진 형 (인)

IV. 한국관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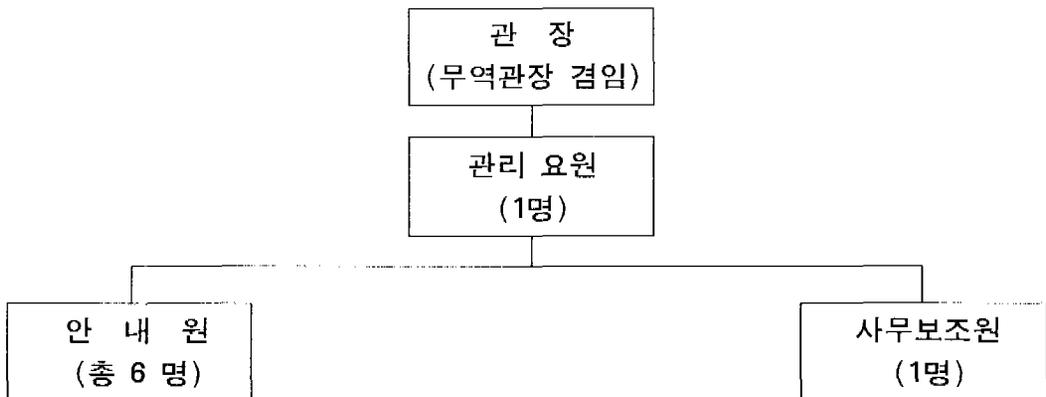
1. 기본방침

한국관은 '98년 6월 6일 개관과 함께 설치되었으며, 한국관장으로 현지 무역관장을 겸임토록 하고, 파견요원 1명이 현지에 상주하면서 한국관 개막행사준비, 행사추진, 운영준비, 안내원 채용 등 한국관 운영에 따른 제반업무를 추진토록 하였다. 한국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치밀한 한국관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경비절감을 위한 최소한의 인력을 파견토록 하였다.

가. 운영계획

- 매일 개장시간 30분전(09:30) 운영요원 출근 및 개관준비를 완료하고, 폐장시간 30분후 전체 시설 점검후 한국관에서 지정한 별도 경비용역업체에 인계
- 한국관내 “투자 및 무역 상담센터”(Investment & Trade Information Center)를 설치(※ 운영사무실에서 업무 수행)하여, 한국관 참관객중 한국에 대한 투자 및 무역교류에 관심있는 방문객에 적극적인 안내업무 수행

나. 운영체제



2. 분야별 운영

가. 인력운영

1) 기본 방침

- EXPO현장이 무역관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80km : 자동차로 3시간소요), 무역관에서의 관리가 어려움에 따라 본사인력을 파견하여 한국관을 운영하되 무역관장이 월 2회 정도 출장(1박 2일) 방문하여 운영 감독
- EXPO 개최기간이 8개월에 달하게 됨에 따라 운영요원을 교대 파견하여 원활한 운영을 도모
- 개장시간이 길어 안내원을 일일 2교대(일일 6시간근무)로 운용하고, 사무보조원(일일 8시간 근무) 1명을 두되,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 행사인력은 별도 행사계획에 따라 파견하되, 공식개막일(6. 6)과 한국행사주간(8. 15~21)을 주요 행사일로 준비

전체 운영 인력

구 분	인원	근 무 기 간	주 요 임 무	비 고
관 장	1	'98. 6. 6-99. 1. 31	- 한국관 운영 총괄 (바닐라무역관장 겸임)	비상주
관 리 요 원	1	'98. 5. 10-99. 2. 1	- 사전준비, 운영, 관리, 홍보, 의전, 사후처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8. 5. 10- 8. 25 (3직급, 장병석) • '98. 8. 23-10. 21 (4직급, 이홍균) • '98. 10. 19-12. 15 (3직급, 추병원) • '98. 12. 15-'99. 2. 1 (2직급, 박순규)
안 내 원	6~4	'98. 6. 6-99. 1. 31	- 한국관 안내	여자
사 무 보 조 원	1		- 한국관 운영보조	채용치 않음
합 계	8	-	-	-

2) 사전 준비 및 초기 관리요원 파견

- 파견인원 : 1명
- 파견기간 : '98. 5. 10-8. 25
- 수행업무 : 한국관 공사 감독 및 준공검사 입회
전시품 및 장비 반입, 시운전 입회
운영/행사/홍보 관련 사전조사 실시

3) 안내원 및 사무보조원 채용 관리

- 소요인원
 - 안내원 : 6명(2교대)
 - 사무보조원 : 1명
- 채용방법 : 한국관 관장/관리요원 책임하에 현지에서 채용 및 교육
- 선발시기 : '98. 5월말
- 채용시기 : '98. 6월
- 근무조건
 - 근무시간 : 안내원 매일 6시간, 사무보조원 매일 8시간 근무원칙
 - 월 급여 : 안내원 월 US\$350, 사무보조원 월 US\$400 기준
으로 하되 현지의 노동조건을 최대한 반영하여 탄
력적으로 운영
- 안내원 복장 : 유니폼 2벌, 신발 1족 지원

나. 행정관리

1) 문서수발, 통신

가) 문서기호 배정

- 국 문 : 무공필액
- 영 문 : - E-Mail : PPE(Philippine Expo Korea Pavilion)
- 서 신 : KTPPE

나) 한국관 직인 제작 사용

- 직인 색인 : 필리핀 엑스포 '98 한국관 관장

- 사용 기간 : 한국관 운영기간중
- 직인 관리 : 한국관 관장(본사파견 관리요원)

다) 통신회선 : 전화 1회선(팩스, E-Mail 겸용, 핸드폰 1대)

2) 자금관리

가) 관리계획 수립

- 당시 국내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 집행을 자제하는 방안 등을 강구함으로써 예산의 최대한 절감 노력을 경주토록 하였음
- 예산의 비목간 전용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불가피한 경우 본사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 전용 집행할 수 있도록 함
- 비목내에서도 가급적 상기 용도별 책정액 범위내에서 집행
- 안내원, 사무보조원 급여는 현지관례에 따라 2회/월 지급
- 안내원, 사무보조원 월급여는 전도금액을 한도로 하여 최대한 절감하는 방향으로 급여액을 책정

나) 예금구좌 개설

- 예금종류 : 달러화구좌, 현지화구좌
- 예 금 주 : 한국관 명의(단, 관장 또는 관리요원중 1명의 서명
으로 구좌를 관리)

다) 금전출납담당 : 본사 파견 관리요원

다. 시설관리

1) 유지 보수 및 경비

- 전체 경비 : EXPO 당국
- 한국관 시설물(폐장중)경비 : 경비용역업체 활용(월 US\$ 450)
- 유지 보수 : 한국관 운영요원

2) 청소

- 일일청소 : 청소용역업체 활용(월 US\$ 300)

- 대청소 및 방역 : EXPO 당국

3) 보험 부분

- 부보범위 :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상해보험 등 엑스포당국의 강제보험에 한하여 가입(예산절감 목적)
- 세부사항 : 한국관 준공과 동시에 유효한 계약을 세부시행계획에 반영

4) 비품확보

- EXPO의 장기개최로, 임차하는 것보다 구입이 오히려 저렴하고 현지 비품임차 체계가 정립되지 않음에 따라 대부분의 비품을 구입하여 확보하고 구입비품을 폐막후 무역관에서 계속 활용토록 추진
- 본사보유분 또는 국내구입이 효율적인 품목(PC, 프린터, 주변기기 등)은 국내에서 확보하여 현지발송하고, 기타 품목은 현지 여건을 감안하여 현지에서 구입 추진

라. 직매업체 관리

- 계약서상 명시된 사항의 이행을 수시로 확인·감독하고, 종사원 현황 및 판매실적 파악 철저
 - 일일 판매 실적 보고양식을 작성, 사전배포 후 해당업체(밀양실업)가 직접 작성 서명후 징구
- 사후처리와 관련, 업체관리 감독 철저
 - 직매업체가 한국관 명의로 등록되었음에 유의, EXPO당국 및 현지 세무당국과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출실적 파악 기록유지

3. 보고 체계

가. 한국관 보고 구분

구 분	주요 보고내용	보고시기
주간 운영실적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별 입장객수(EXPO장내 및 한국관내) ○ 민속무용공연(회수, 관람인원) ○ 홍보활동내용(현지 홍보실적 및 취재활동 지원 내역) ○ 한국식당 및 직매업체 판매 및 국내 송금실적 ○ 주요 내방인사 ○ 기타 특기사항 ○ 한국관 인원현황 	매주 말
수시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행사시 ○ 주요국가관 전시내용 조사 ○ 종합보고서 발간용 자료 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진촬영(VIP 방문등) 기록 유지 - 엑스포 당국의 각종 홍보자료 및 규정 수집 - 한국관 업무일지등 기록 유지 	수 시
종합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비사항 : 설문조사, 국가관 전시내용 조사 ○ 기록유지 : 한국관 업무일지 등 기록유지, VIP 방문 사진촬영 ○ 영상자료 : 사진 촬영 ○ 종합보고서 : 한국관 참가 종합보고서 발간 	'99. 3월

나. 주간 보고 내용

1) 보고기간 :

2) 운영일반

(단위 : 회)

구 분		전주누계	금 주	누 계	비 고
입장객수	EXPO장내				
	한 국 관				
민속무용 공연실적	공 연 회 수				
	관 랑 개 수				
VTR 상영실적	상 영 회 수				
	관 랑 개 수				

3) 홍 보

가) 홍보회수

(단위 : 회)

구 분	전주누계	금 주	누 계
TV 방송매체 홍보			
RADIO 방송매체 홍보			
인쇄매체 홍보			
합 계			
국내 취재진 지원			

나) 주요 홍보 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방송 매체	* 주요보도내용, 매체명, 방송시간 등
인쇄 매체	* 주요보도내용, 매체명, 게재일자(실물 스크랩후 추후 별송 등)
국내취재진	* 지원일시, 지원내용, 취재진 직함, 인터뷰시 주요 인터뷰 내용 및 국내방송 또는 게재 예정 일시 등

4) 주요 내방인사 : 방명록 및 사진촬영

가) 방문실적

(단위 : 명)

구 분	전주누계	금 주	누 계	비 고
국가원수, 수상급				
장관급				
기타 VIP				
합 계				

나) 주요인사

성 명	직 위	방 문 일 시	특 기 사 항
			목적, 관람소감 등

5) 간행물 배포 현황

(단위 : 부)

구 분	전주이월	금주배포	배포누계	재 고
투자유치 홍보자료 - Investing in KOREA - A guide to foreign Investment				
지방정부 홍보자료 - 21세기를 준비하는 전남도 - Hope for EXPO 2010 - Export Goods - 전남관광 - 기회와 희망의 전남 - 충북도 소개 자료 - 강원도 소개 자료 - 제주도 관광안내 - 인천광역시 소개 자료 - 광주광역시 소개 자료				

6) 기념품 배포 현황

(단위 : 개)

구 분	전주이월	금주배포	배포누계	재 고
황금기복선	10			
하 회 탈	100			
부 채	4,000			
뺏 지	5,000			
팜 플 렛	50,000			

7) 한국식당 및 직매점 매출 및 국내 송금현황

(단위 : US\$)

상 호	관 매 실 적			송 금 누 계		
	전주누계	금 주	누 계	전주누계	금 주	누 계
밀양실업						
합 계						

8) 한국관 상근 인력 현황

(단위 : 명)

구 분		인 원 수	변 동 내 역	비 고
K	본 사 요 원			
O	안 내 원			
T	사 무 보 조 원			
R	경 비 원			
A	소 계			
공 연 단 원				
밀 양 실 업				
총 계				

4. 운영 실적

'99. 1. 31일까지 총 184일에 걸친 개장기간동안 EXPO장 총 내방객수와 한국관 내방객수는 1,309천명과 1,019천명을 각각 기록하였다.

BIE는 비공인엑스포로서 국내행사 수준으로 치루어진 제한된 여건과, 개최 일정의 잦은 변경, 부분개장 등의 우여곡절끝에 치루어졌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많은 수의 내방객이 유치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한국관에는 EXPO장 방문객의 78%가 방문함으로써 한국관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이 얼마나 높았었는지를 알 수 있어, 한국관 참가는 당초의 참가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했다 할 것이다.

가. 입장객 내방실적

(단위 : 명)

구 분		실 적	비 고
입 장 객	EXPO장내	1,309,134 (7,115)	개장일 총 184일
	한 국 관	1,019,012 (5,538)	

주) 괄호내는 개장일의 일일 평균 입장객 수

나. 홍보실적

○ 주요 홍보내용 : 한국주간 행사, 심가회 무용단 공연, 한국관 전시내용 등

(단위 : 회)

구 분	실 적	비 고
T V 홍 보	10	현지 ABS-CBN 등
라 디 오 홍 보	8	
인 쇄 매 체 홍 보	10	Angeles Observer, Manilla Bulletin, The Philippine Star
합 계	28	
국내 취재신지원	1	SBS-TV 취재지원

다. 주요 내방인사

(단위 : 명)

구 분	실 적	비 고
국가원수, 수상급	3	Fidel Ramos(필리핀 대통령), Gloria M. Arroyo(부통령)
장 관 급	11	이수성 박사, Salvador Laurel(NCC 위원장), Cesar B. Bantista(통산성장관)
기 타 V I P	63	Lito Lapid(팜팡가주지사), Morales(NCC 사무총장), Benjie Lope(Expo 위원장), 박동순(주비 한국대사) 등
합 계	77	

라. 간행물 배포

(단위 : 부)

구 분	실 적	재 고
투자유치 홍보자료		
- Investing in KOREA	100	0
- A guide to foreign Investment	100	0
지방정부 홍보자료		
- 21세기를 준비하는 전남도	100	0
- Hope for EXPO 2010	200	0
- Export Goods	50	0
- 전남관광	120	0
- 기회와 희망의 전남	100	0
- 충북도 소개 자료	500	0
- 강원도 소개 자료	900	0
- 제주도 관광안내	400	0
- 인천광역시 소개 자료	215	0
- 광주광역시 소개 자료	100	0

마. 기념품 배포

(단위 : 개)

구 분	실 적	재 고
황 금 거 북 선	9	1
하 회 탈	100	0
부 채	4,000	0
뺏 지	5,000	0
팜 플 랫	50,000	0

※ 황금거북선 1개는 대본사 반송

바. 직매점 매출 및 국내 송금

(단위 : US\$)

상 호	판 매 실 적	송 금
밀양실업	48,503	28,500

V. 문화·홍보활동 및 특별행사

1. 민속예술단 파견

필리핀 엑스포 '98 한국관 공연단은 “한국의 날”과 “한국주간”인 '98. 8. 14(금)~8. 20(목) 기간중 파견하였다.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와 한국무용협회에 추천의뢰 결과와, 제출된 공연계약서 검토 결과 공연단은 심가희 무용단으로 선정되었는바, “민속공연 계약서”에 따라 위 기간중 한국관에서 공연토록 하였다.

주요 공연내용은 총 1시간여에 걸쳐서 26명의 출연진들이 부채춤, 장고춤, 사물놀이 등을 공연하였는데 총 14회에 걸친 공연은 박람회장내에서 최고 인기 프로그램이 되었다.

관객반응을 보면 엑스포당국의 소극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한국주간 특별행사(무용공연)가 언론 등에 보도되고 이와 함께 우수한 공연내용이 점차 알려지면서 연일 많은 인원이 참관을 하였으며, 특히 평소에는 월, 화요일중 총 500명 내외의 관람객이 엑스포장을 방문하곤 하였으나 행사기간중에는 일일 3,000명 가까운 관람객이 공연을 보기 위해 엑스포장을 방문하였고 행사 종료시점인 수, 목요일에는 평소 엑스포 방문인원의 배 이상의 인원이 공연을 보기 위해 방문을 하여 공연장 좌석(약 1,500명 수용)에 관객들이 미처 앉을 수 없어 바닥까지도 관람객이 가득 차는 상황을 맞기도 하였다.

한국무용 공연을 참관한 모든 관람객은 흥겹고 감동적인 공연내용에 절로 환성과 박수를 보내며 찬탄을 금치 못하였으며, 공연 종료후에도 자리를 쉽게 뜨지 못하고 많은 관객들이 한국관 및 공연 관계자들에게 우수한 공연의 관람 기회를 준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뜻을 적극적으로 전해 오기도 하였다.

엑스포당국 관계자들도 공연내용이 이렇게 뛰어나고 감동적일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1주일만에 행사가 종료되는데 대하여 많은 아쉬움을 표하여 왔다.

엑스포 Lopez 위원장은 마지막 공연시(8. 20, 18:30) 한국관을 재차 방문하여 공연을 관람하고는, 한국관 특별행사로 인해 고무된 분위기를 계속 살리고 싶다면서, "금주만('98. 8. 20~23)이라도 특별주간 행사 배너를 그대로 놓아 두기를" 요청하여 왔다.

한국관의 민속공연은 엑스포의 행사분위기를 크게 고취시키는 역할을 함으로써 필리핀 엑스포의 정착 및 일반홍보에 가장 기여를 한 국가관으로 한국관을 깊이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더욱이, 공연내용이 참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안겨주면서 평소보다 배 이상의 인원이 공연을 참관하면서 이들에게 한국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와 함께 한국에 대한 우호의 감정을 심어줄수 있었음은 무엇보다 값진 성과로 평가된다.

심가희무용단은 공연을 위하여 모든 의상을 새로 맞추어 준비하는 등 우수한 공연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준비해오에 따라, 문화적으로 큰 자부심을 갖고 있는 필리핀인 관객들에게 한국의 예술혼을 느끼게 하는 깊은 감동을 불러 일으키며 양국간 우호감을 더해 준 것으로 판단된다.

가. 공연내용 및 프로그램

시 간	공 연 명	출연자인원	내 용	비 고
6분	1. 부채춤	김진영 외 12명	부채춤은 한국민속무용 중에서 가장 아름답게 펼쳐지는 춤의 하나이다. 양손에 부채를 들고서 추는 춤으로 부채의 실용면과 장식이외의 용도로써 무궁화 꽃모양을 비롯하여 불길, 산모양등 화려한 복장과 함께 기하학적으로 펼쳐지는 율동으로 대중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	
6분	2. 환희	심가희 외 11명	우리 춤의 근원인 전통의 춤사위와 민족의 고난을 이겨낸 후의 역사를 재조명하는 한풀이와 억압받던 시절에서의 자유를 찾은 밝은 오늘의 춤을 엮어 변천사를 꽃현한 춤이라 하겠다.	

시 간	공 연 명	출연자인원	내 용	비 고
9분	3. 즉흥무 I 4. 부당춤	전영순 외 10명 십 가 회	즉흥무는 말 그대로 어떤 양식에 구애됨이 없이 춤꾼의 분위기에 따라 즉흥적으로 추는 춤이다. 이 춤은 특정한 음악에 구애됨이 없이 무자의 감흥에 따라 한 손에 수건을 들고 추는 경우가 많아 수건춤이라고도 한다.	
6분	5. 장고춤	유현옥 외 10명	농악에서 파생되어진 춤으로 꼬리치마 지고리에 장고를 둘러맨 여인들이 다양한 장고가락을 치며 흥겹고 뻗시 있게 꾸며나가는 신 무용이라 할 수 있다.	
10분	6. 사물놀이	신만중 봉상패사물놀이	사물놀이는 농사일을 하던 우리 조상들의 삶이 희, 노, 애, 락을 다양하게 표현해 주면서 풍요의 기원과 노동의 전과정에 대한 주술적인 축원이 그 내용의 핵심이 된다. 팽과리, 징, 장고, 북을 이용해 연주하는 사물놀이는 맺고 푸는 가락의 번주가 다채롭고 정교하다.	
5분	7. 3고부	김양혜 외 8명	다이내믹한 리듬을 연출해내며 북을 두드리는데 이 춤은 소리와 춤의 만남이라 할 수 있다. 격정적이고 강렬한 북소리와는 대조적으로 아름다운 여인들의 선이 돋보인다.	
10분	8. 북의 소리춤 1) 사물놀이선반(재상) 2) 진도북춤 3) 소고춤 4) 상모놀이 5) 휘날래	전 원	농악부를 새롭게 재조명한 춤이다. 사물놀이라 일컫는 징, 팽과리, 장고, 북이 어우러진 선반과 춤으로 만든 소고놀이, 진도북춤 등으로 다양하게 펼쳐지는 춤과 사물의 만남이다.	
57분	총 공연시간			

필리핀엑스포 '98 한국관 민속공연 계약서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하는 필리핀엑스포 '98('98. 6. 6-'99. 1. 31) 한국관 참가와 관련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갑'이라 칭함)와 심가희무용단(이하 '을'이라 칭함)간에 한국 전통민속예술 공연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 1 조(계약의 목적)

필리핀엑스포 '98(이하 '엑스포'라 칭함)에서 관람객을 대상으로 한국의 전통민속예술을 소개하여 국위선양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시행하는 전통 민속예술공연(이하 '공연'이라 칭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 2 조(을의 책임)

1. 을은 본 공연이 국가적인 행사임을 인식, 사명감을 가지고 본계약을 성실히 준수 이행함을 물론, 공연활동을 통한 한국 전통예술 문화홍보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2. 을은 엑스포기간중 공연에 차질이 없도록 본계약 6조에 규정한 공연단원을 공연개시 1일전까지 현지에 도착시켜 공연준비에 임하여야 한다.
3. 을은 공연 외에 한국관 운영과 관련하여 갑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 을은 본 계약상의 권리 및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예술단원에 대한 주재국에서의 개인별 신상관리 및 단원전체 관리감독의 책임과 예술단원의 공연 및 공연이후 일체 행위에 의하여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국내법 및 주재국법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며 또한 그 책임을 '갑'또는 제3자에게 전가하는 등 국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제 3 조(공연기간)

1. 을의 공연기간은 1998년 8월 14일부터 20일까지 7일간으로 한다.
다만 공연개시일 및 기간은 엑스포주최측 및 갑의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2. 1항의 경우 주최측 사정에 다른 불가피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갑은 을에 대하여 공연 지연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을은 갑에 대하여 일체의 보상 또는 배상을 청구하지 않는다.

제 4 조(공연장소 및 횟수)

1. 을은 공연기간 중 갑이 지칭하는 시간 및 장소에서 매일 2회이상의 공연을 하여야 하며, 공연횟수 및 장소는 현지 사정에 따라 갑이 조정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라야 한다.

제 5 조(계약금액)

을의 공연에 따른 공연수수료는 전 계약기간에 대하여 총액 지급방식에 의거, 소모품제작비 등을 포함하여 쌍방이 합의한 일금 W7,000,000원 정으로 한다.

제 6 조(체재비 및 항공비)

1. 체재비(식비 및 숙박비) 및 항공비는 갑이 부담한다.
2. 1항의 체재비는 갑의 국외여비규정을 적용하여 단장 1인은 2직급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단장이외의 스태프를 포함한 공연단원은 4직급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3. 항공비는 서울에서 마닐라까지 공연단 전원의 왕복항공권(economy class)을 1회에 한하여 지원한다. 단, 계약 8조에 의거 파견인원을 교체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항공임은 을이 부담한다.

제 7 조(계약금 및 제재비 지불)

갑은 본계약 제5조의 계약금액을 아래와 같이 을에게 지급한다.

1. 공연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3차로 분할하여 국내에서 지급한다.

가. 1차분(20%, ₩1,400,000)은 본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한다.

나. 2차분(50%, ₩3,500,000)은 공연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한다.

다. 최종회분(30%, ₩2,100,000)은 제 14조에 정한 공연결과 보고서를 갑이 접수후 10일 이내에 지급한다.

2. 제재비(식비 및 숙박비)는 공연 개시 이전에 본 계약서 6조 2항 기준에 의거 지급한다.

제 8 조(예술단원 구성)

1. 을은 계약체결후 7일 이내에 현지공연에 적합한 예술단원을 선정하여 공연단(단장 1명, 단원 및 스태프 19명)을 구성하고 그 인적사항을 계약체결후 7일내에 제출하여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을은 갑이 승인한 예술단원을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 사전에 사유서를 첨부하여 갑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갑이 합리적인 판단에 의거하여 을의 예술단원에 대해 교체를 요청할 경우 을은 이를 수락하여 교체하여야 한다.

제 9 조(공연 종목)

1. 을은 본계약 체결후 7일 이내에 현지에서 공연할 공연종목 및 그 내용 등을 작성, 갑에게 제출하여 갑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을은 현지에서 공연기간중 특별한 사유에 의거 공연종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한국관 관장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 10 조(공연소품 운송)

을의 공연에 필요한 소품의 운송비는 갑이 부담하되, 갑은 운송비용 절감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 11 조(시연회 개최)

1. 갑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을에게 시연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을은 기 제출하여 갑이 승인한 예술단원과 공연종목으로 현지 파견 7일전까지 시연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갑이 공연내용의 보완을 요청할 때에는 을은 반드시 이를 보완해야 한다.
2. 시연회에 따른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제 12 조(행정지원)

갑은 을이 예술단원을 파견하는데 필요한 해외여행 추천, 박람회출입증 발급 등 행정편의를 제공하며, 을은 이에 적극 협력해야 하며 해외여행 수속에 따른 경비는 을이 부담한다.

제 13 조(공연결과 보고서 제출)

을은 공연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예술단원을 전원 귀국시키고 30일 이내에 공연결과 보고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14 조(계약의 해지)

1. 갑은 다음의 경우에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가. 박람회 당국 또는 갑의 사정에 의거 공연계획이 불가피하게 취소될 경우,
 - 나. 을의 본 계약 이행태만으로 한국관 운영 또는 공연에 큰 차질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고 갑이 판단할 경우,
 - 다. 을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본조 제1항의 가의 사유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을은 갑이 공연을 목적으로 을에게 지급한 모든 금액 중 을이 갑이 인정하는 공연

준비를 위해 직접 지출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갑에게 반환해야 한다.

3. 본조 제1항의 나 및 다의 사유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액 예정으로서, 갑이 계약 해지일까지의 공연과 관련하여 지출한 모든 금액과 국가적 신용실추 등을 감안하여 계약해지일까지 공연관련 지출비용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갑의 청구에 따라 10일 이내에 갑에게 반환 또는 보상하여야 한다.

제 15 조(공연단원 유고시 조치)

1. 공연기간중 예술단원이 질병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공연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 진료 등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을이 져야 한다.
2. 예술단원이 임의로 공연을 기피하거나 갑의 사전승인 없이 현지를 이탈할 경우, 갑은 이탈 예술단원 1명당 현지체제비 및 공연수수료 등을 고려하여 1일 U\$200을 갑이 지급할 금액에서 공제한다.
3. 을은 공연기간중 공연단원이 현지에 체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을은 갑으로부터 사전동의를 득하여, 교체 예술단원을 지정, 을의 비용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제 16 조(책임과 보상)

본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 및 민원처리에 대하여는 을이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며 이에 대하여는 을의 비용으로 해결한다.

제 17 조(조항해석)

본계약의 조항해석에 이의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갑의 해석 또는 결정에 따른다.

제 18 조(분쟁해결)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으로 문제가 야기될 경우, 갑과 을

의 합의에 따르며,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분쟁은 국내법에 의해 해결되며, 관할법원은 서울지방법원으로 한다.

제 19 조(보증인)

1. 을은 본계약 체결과 동시에 본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보증인 2명을 지정하고 보증인의 인감증명서 및 연간 재산세 납부 증명서(보증인 2인의 재산세납부 합이 15만원 이상) 1부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을은 본계약의 이행보증을 위하여 계약금액 상당액 보상의 계약 이행 보증보험을 부보하여야 한다.

제 20 조(계약서 작성)

본계약을 보증하기 위하여 갑과 을 및 을의 보증인 1명이 날인한 계약서 2통을 작성,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하며 공히 정본으로 한다.

제 21 조(계약발효)

본계약은 계약일로 효력이 발생하며, 제13조에 따른 공연결과 보고로 종료한다.

1998년 8월 4일

갑 :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9

대한부역투자진흥공사 사장 김은상

을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 주공A 104동 1504호

성 명 : 심정순(심가회) (인)

주민등록번호 : 581231-2232819

을의 보증인(1)

주 소 : 서울 노원구 중계동 360-2 청구A 103-1405

성 명 : 최 철 (인)

주민등록번호 : 560308-100681

보증인 (2)

주 소 : 서울 노원구 중계동 78 진도내림A 1307

성 명 : 박 중 기 (인)

주민등록번호 : 321201-1005015

2. 특별행사

가. 한국관 개관식

- 일 시 : '98. 6. 6(토)
 - 장 소 : 한국관
 - 주요 참석자
 - 국내인사 : 박동순 필리핀대사
 - 외국인사 : 라모스필리핀대통령, 엑스포위원장(Lopez) 등 관계인사
 - * 참고 : 필리핀 독립 100주년 기념행사(6. 12-14)
 - 내 용 : 필리핀 독립 100주년 기념
 - 정부특사 : 이수성 전총리(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 (한국관 방문/'98. 6. 13, 19 : 00)

나. 한국관 특별행사

민속예술단 파견기간중, 광복절인 '98. 8. 15(토) 17 : 30분, 115명의 내외 귀빈이 참석한 가운데 축하리셉션이 개최되었으며, 이후 8. 20(목)까지 전체 7일간 14회의 부용공연이 있었다. 공연일정과 참관인원은 다음과 같다.

- 8. 14(금) 오후 공연 900명, 저녁 공연 1,300명
- 8. 15(토) 오후 공연 1,200명, 저녁 공연 2,500명
- 8. 16(일) 오후 공연 1,800명, 저녁 공연 1,400명
- 8. 17(월) 오후 공연 1,500명, 저녁 공연 1,200명
- 8. 18(화) 오후 공연 1,800명, 저녁 공연 800명
- 8. 19(수) 오후 공연 2,700명, 저녁 공연 2,500명
- 8. 20(목) 오후 공연 3,500명, 저녁 공연 3,200명

3. 주요 연설문

필리핀엑스포 한국관 특별행사 리셉션 사장님 연설문

Your Excellency Dong -Soon Park, Korean Ambassador to Philippines, Mr. Benjie Lopez, President of EXPO PILIPINO, and distinguished guests, who have visited the Korean Pavilion to celebrate Korea Festival Week in spite of your busy schedules,

As the president of KOTRA, the organization responsible for the Korean Pavilion, I am greatly honored to organize Korea Festival Week during the Philippines Centennial EXPO '98, an event which celebrates the centenary of the declaration of the independence of Philippines, one of Korea's closest friends and allies.

Moreover, my gratitude is extended to all of you for joining us this evening at this reception for Korea Festival Week.

As you can see in the Friendship Zone of the Korean Pavilion,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Philippines has a long history. Throughout their history the two countries have remained close, like brothers, always ready to lend support when it was needed. Many young Philippine men made the supreme sacrifice for the sake of Korean democracy during the Korean War.

Considering the historically close nature of the relations between our two countries, it was only natural that Korea would want to participate in an EXPO held to celebrate the first century of the declaration of Philippine independence, and to extend its sincere greetings.

Although the Korean Pavilion is not overly large, we have worked hard to bring it into being. Furthermore, it was of special significance for us that Korean Pavilion was the first among the national pavilions to be opened to the Philippine public.

I hope that under the theme, "A Bridge of Friendship between Korea and Philippines," our participation in the EXPO will serve to encourage further co operation and mutual understanding between our two countries.

Inspired by our long history of friendship and in the desire to strengthen the bonds which unite us, we organized Korea Festival Week with a view to helping the Philippine people better understand Korea by introducing them to traditional Korean culture.

In the words of a Tagalog saying, "Magkaibigang Tunay……, Tungo Sa Magandang Buhay…" (막까이비강 뚜나이, 똥고 사 바간당 부하이 : 친구관계를 통한 상호발전을 기원하면서 자주 언급하는 문구), I hope that through intense co-operation and continuing close relations, our countries will achieve sustained mutual growth and prosperity.

Also, it is my sincere hope that everyone here together this evening will share in the success achieved as a result of the friendly relations between our countries.

I would like to take this opportunity to express my sincere appreciation to Mr. Lopez, president of EXPO PILIPINO and other members of his staff involved in the organization of the EXPO, and express to them my sincere gratitude for their cooperation in bringing the Korean Pavilion into being.

In closing, on behalf of the Korean people I wish to offer my hearty congratulations on this one hundredth anniversary of the independence of Philippines.

Thank you for your attendance today.

필리핀엑스포 공연시 사장님 연설문

"Magandang Gavi Bayan!" (마간당 가비 바얀 : 저녁 인사말)

First of all, as the president of KOTRA, the organization responsible for the Korean Pavilion, I would like to express my sincere gratitude to all of you for joining us this evening at Korea Festival Week.

We designated this week as "Korean Festival Week", and throughout its length we will present various aspects of Korean culture, beginning with a performance of traditional Korean dance.

We can see that both countries have many things in common, specially in cultural aspects. The Philippine people love peace, music, dance and art, so do the Koreans. This can be found easily in everyday life of both peoples.

This evening you will see some of various categories of traditional Korean dance. I am sure you will be fascinated by the attractions of the performance, just like the Koreans who have ever seen Philippine dance such as Pandanguhan(판당구환) and Tinikling(티니클링) become its fans.

Also Philippine songs are very popular and enjoyed a lot in my country. Specially the Korean version of "Anak"(아낙) by Fredy Aguila

can be counted among our most favorite songs.

In a moment, the Ga Hee Shim Dance Troupe, one of the most famous traditional Korean dance groups, will bring you to a new world of attractions of Korean culture. Though the harmonization of the vigorous music and the graceful movements, please feel the spirit of five thousand years of Korea's cultural heritage.

In closing, I would like to offer my heartfelt congratulations on the centenary of the independence of Philippines and to say that may long continue a truthful friendship between the two friend countries, "Kaibigan Walang Iwanan... para Hanggang Sa Huli..." (카이비간 왈랑이와난 빠라 항강 사 후리 : 친구여 이 세상 끝날때까지 당신을 떠나지 않으렵니다.)

Thank you.

Ⅵ. 직매업체

기존의 BIE공인 엑스포와는 달리, 필리핀엑스포가 국내위주의 행사이며, 국민소득이 낮아 영업여건이 매우 불리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촉박한 준비기간과 불투명한 영업전망 등 제반여건상 과거 EXPO 직매 경험 보유업체를 참가자격으로 제한하고, 일반 행사광고와 사전설명회 개최를 통해 대업체 홍보하였다.

운영업체 선정은 예정가격 산출후 신청업체에 견적서를 요청, 견적업체중 최고가 제시업체를 선정하되, 최고견적가 선정업체가 계약 불이행시에 대비하여 제2위 견적가 업체 1개사를 후보 업체로 선정하여 후보업체를 대체 파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직매업체 선정을 위한 계획과 직매점 운영 계약서는 다음과 같다.

1. 직매점 운영업체 참가조건

가. 운영목적

- 엑스포 한국참가와 관련 한국문화의 소개 및 홍보의 일환
- 외화 획득

나. 운영기간 : '98. 6. 6~'99. 1. 31

다. 계약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엑스포 폐막후 1개월('98. 2. 29)

라. 직매점 규모 : 1개사, 한국관내 15.525S/M

마. 직매품목 : 민속공예품 및 각종 기념품

- 부채, 보조장신구, 열쇠고리, 소형도자기, 모자, 선글라스, 문진, 인삼 제품, 인형, 보온병, 소형 전기전자제품, 가죽제품, 벵타이, 손수건, 샌달, 기타 한국의 정취와 문양을 지닌 제품

바. 직매점 설치

- 벽체, 바닥마감, 전기배선 등 기본장치 공사설치 제공
 - － 진열장 및 전시대 등 판매시설은 직매업체 부담
- 한국관과의 조화와 통일성을 위해 직매점 내부장치는 KOTRA가 사전 승인
- 직매점 운영업체는 엑스포 종료후 운영업체의 경비로 설치한 장치 및 미품 등을 운영업체 부담으로 철거하여 원상복구

사. 직매점 운영 방침

- 직매방참업체는 사전 선정된 제품을 판매하여야 하며, 변경시 공사가 사전승인
- KOTRA는 직매장 운영에 관한 감독권 및 회계장부열람권 보유
- 직매점 운영업체는 한국 직매점 운영취지를 충분히 인식하고 여하한 경우에도 국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됨
- 직매점 운영업체는 직매점 운영과 관련된 선정조건, KOTRA 지시사항 이행 및 엑스포 당국 규정 준수
- 직매점은 운영업체의 책임하에 자율적 운영
- 직매점은 KOTRA 및 엑스포 당국의 규정을 준수하며, 엑스포 당국이 품목 및 가격을 제한할 경우 그 결정에 따라야 함
- 직매점 운영업체로 선정된 업체는 직매점 운영권을 포함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불가
- 직매점 운영업체는 엑스포 기간 종료후, 운영업체의 경비로 설치한 장치 및 미품 등을 운영업체의 부담으로 철거하여 원상복구하여야 함
- 직매업체는 엑스포 당국의 규정에 따라, 로얄티 및 제세를 엑스포 당국에 납부
- 직매점 운영관련 발송 및 통관비, 부가가치세, 소득세, 보험료 등 제세공과금 및 수도·전기·전화 등 시설사용료, 기타 운영관련 제반비용은 직매업체 부담

아. KOTRA 지원내용

- 직매점 사용권 부여
- 직매점 운영관련 물품의 발송, 통관에 따른 행정상 지원
- 기타 직매점 운영관련 행정지원

2. 직매점 운영업체 선정

가. 선정방법 및 참가자격

선정방법	- 예정가격에 의한 최고가 견적업체 1개사 선정.
참가자격	- BIE공인 해외 EXPO 한국관 직매점 참가 유경험 업체. 단, 과거 EXPO에 참가하여 국위를 손상시킨 업체 제외.

※ KOTRA는 제2위 최고견적가 업체 1개사를 후보업체로 선정, 최고 견적 업체가 계약불이행시 동 후보업체를 대체선정 파견할 수 있도록 함

※ 예정가격 이상의 견적제시 업체가 없을 경우 현장에서 3회 재견적 요청 후 유찰시는 마지막 제시견적을 기준으로 최고가격 제시업체를 선정

나. 선정일정

1) 참가업체선정

- 기 간 : '98. 3. 27일 17 : 00
- 장 소 : 무역센터빌딩 13층 KOTRA 전시사업처 해외전시부
- 참가신청 : 밀봉된 견적제시서 및 견적조건 서약서와 함께

관련 서류 제출

- 참가신청시 제출서류

참가신청서 1부(KOTRA 소정양식)/사업계획서 1부/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법인(또는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사용 인감계 1부/국세, 시세 완납증명서 1부/계약참가자 위임장 1부

※ 사전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아도 참가신청 가능

-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회사소개
 - 판매 품목 및 가격, 수량
 - 향후 추진일정(계약체결일 이후 엑스포장 철거시까지 주요일정)
 - 인력채용 및 운용계획
 - 예상판매액, 예상원가(재료비,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등으로 세분), 예상이익

2) 계약

- 계약체결일자 : '98. 3. 30(월)
-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EXPO 폐막후 1개월('99. 2. 29)
- 계약금액
 - 전적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하며,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 전액 납부
 - 동계약금액은 한국관 직매점 운영권에 대한 대가로 KOTRA에 귀속됨
- 계약보증금 납부
 - 선정업체는 계약체결전까지 계약금액의 10/100 이상의 계약보증금을 납부
 -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가능
 - 동 보증금은 계약당사자인 직매점 운영업체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KOTRA에 귀속됨
 - 이행보증보험증권일 경우 피보증인의 명의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으로, 보증기간은 계약기간 개시일부터 계약기간 종료 60일('99. 4. 30) 이후로 함.

3. 계약서

필리핀 엑스포 '98 한국관 직매점 운영계약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갑”이라 칭함)와 밀양실업 대표 서혜자(이하 “을”이라 칭함)간에 필리핀 엑스포 '98 한국관 직매점(이하 “직매점”이라 칭함) 운영에 관한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 1 장 일반조항

제 1 조(계약의 목적)

1. 본 계약은 1998년 4월 30일부터 1999년 1월 31일까지 기간(이하 “엑스포 개최기간”이라 칭함) 동안 필리핀 Central Luzon 지역 내 Clark 경제특구지역(이하 “현지”라 칭함)에서 개최되는 필리핀 엑스포 '98(이하 “엑스포”라 칭함)에서 한국의 민속공예품 및 각종 기념품을 판매할 직매점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엑스포 관람객들에게 한국 문화의 홍보를 통한 한국 이미지 재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다만, 개·폐막일을 비롯한 엑스포 개최기간은 필리핀 엑스포 '98 주최측의 엑스포 준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엑스포 당국이 새로이 정하는 기간을 엑스포 개최기간으로 한다.
3. 2항의 경우 주최측 사정에 따른 불가피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갑”은 “을”에 대하여 한국관 개관 지연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을”은 “갑”에 대하여 일체의 보상 또는 배상을 청구하지 않는다.

제 2 조(계약 대상)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게 위하여 “갑”은 “을”에게 엑스포 개최기간 동안 한국관내 직매점 운영권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을”은 “갑”에게 소정의 계약금액을 납부한다.

제 3 조(계약 기간)

본 계약의 존속기간은 원칙적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엑스포 공식 폐막후 1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직매점운영과 관련된 엑스포 당국과의 채무정산 등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종료시까지 효력이 유지된다.

제 4 조(계약 금액)

“을”은 직매점 운영권에 대한 대가로 1998년 3월 27일 견적제시에 의하여 선정된 금액 칠백만원(W7,000,000)을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갑”에게 납부한다.

제 5 조(“을”의 임무)

1. “을”은 엑스포 한국관 직매점 운영 목적을 충분히 인식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한국 문화홍보에 힘써야 하며 여하한 경우에도 국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가. 필리핀 현지 법령 및 엑스포 당국 제규정

나. “갑”과 엑스포 당국과의 한국관 참가계약의 제약정 사항

다. “갑”과 “을”간의 직매점 운영 계약에 따른 특약사항

라. 직매점 운영과 관련된 “갑”의 지시사항

2. “을”은 “갑”의 승인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직매점을 운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없으며, 직매점 운영과 관련된 재 권리를 담보 및 저당 목적으로 공여할 수 없다.

제 2 장 직매점 설치

제 6 조(직매점 장소)

“갑”은 엑스포 개최기간동안 엑스포 한국관내 직매점 장소로 15.525 m²를 “을”에게 마련한다. 단, 직매점 면적과 위치는 필리핀 엑스포 '98 한국관의 전시연출을 위해 필요하다고 “갑”이 판단할 경우 “을”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 7 조(설계 및 장치)

“갑”은 직매점의 벽체, 바닥마감, 전기 배선 등 기본장치를 “을”에게 마련하며, “을”이 위 기본장치외에 추가장치를 하고자 할 경우 “갑”의 승인을 받아 “을”의 경비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단, 추가장치를 할 경우 엑스포 개막일 기산 1주일 전까지 이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 3 장 직매점 운영

제 8 조(운영계획서)

1. “을”은 직매품목의 세부 리스트, 판매가격 및 수량, 예상 운영인원 등을 포함한 직매점 운영계획서(이하 “운영계획서”라 칭함)를 1998년 4월 10일까지 “갑”에게 제출하여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운영계획서상의 직매품목은 한국적 정취와 독특한 문양을 지닌 민속공예품 및 각종 기념품으로 한정하며 “갑”과 “을”의 협의하에 “갑”이 선정한다.
3. “을”은 운영계획서상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하며,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갑”으로부터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다만, 운영계획서 제출 승인 및 내용 변경관련 엑스포 당국의 규정 및 요청시에는 동 당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9 조(운영경비의 송금 및 소요물품의 운송)

1. “을”은 직매점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외환지급인증을 받아 송금하고 관계법에 따른 보고절차를 필하여야 한다.
2. “을”은 “을”의 비용과 책임하에 E/L 등을 발급받아 직매품을 운송하여야 하며, 동 운송 및 현지에서의 직매점 운영에 관련한 국내 및 현지 관계법상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 10 조(영업활동)

“을”은 직매점을 엑스포 규정에 따라 “을”의 비용과 책임하에 운영 하되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을”은 엑스포 개최기간 동안 임의로 영업을 중단 또는 폐지할 수 없으며, 엑스포 당국이 정한 영업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을”은 직매점내에서 “갑”이 승인한 품목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엑스포 당국이 직매 품목, 판매가격 및 수량의 제한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3. 가격표는 직매점 방문객이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곳에 부착하여야 하며, 상품마다 가격표를 필히 부착하여야 한다.
4. “을”은 엑스포 당국의 승인을 얻은 금전등록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판매실적 보고서 및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엑스포 당국이 지정하는 시기 이전에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을”은 매출액을 1일 1회 이상 엑스포 당국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입금시켜야 하며, 엑스포 종료 즉시 모든 자금을 국내로 환급하여야 한다.
6. “을”은 엑스포 당국이 지정한 신용카드에 한하여 외상매출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은 동 외상매출액을 현금판매 때와 같이 금전등록기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 11 조(시설 및 운영관리)

1. “을”은 “을”의 비용과 책임으로 화재, 도난 여타 재난방지, 환경정리 등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나아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성실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을”이 전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갑”은 “을”을 대위하여 “을”의 비용부담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12 조(인사관리)

1. “을”은 직매점 종사원의 신원, 노무관리, 후생관리(부보 포함)등 제반 인사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 “을”은 직매점 종사원의 고용현황을 “갑”이 지정하는 시기에 정기적으로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을”은 “을”의 종사원이 현지 법령 및 엑스포 당국 규정을 준수토록하여야 하며, 종사원의 안전관리에 책임을 진다.
4. “을”은 국내에서 파견되는 종사원을 엑스포 종료후 또는 “갑”이 명백한 사유가 있어 종사원의 귀국을 요구할 때에는 즉시 귀국 조치하고 그 결과를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13 조(직매점 운영 감독)

1. “갑” 및 엑스포 당국은 “을”의 영업활동에 대하여 총괄적인 감독을 하며, “을”은 직매점 운영계약이 정한 내용 또는 직매점 운영과 관련하여 “갑”이 필요로 하는 합리적인 지시를 이행하여야 한다.
2. 전항에 의거 시정조치를 받으면 “을”은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갑” 및 엑스포 당국의 요원은 필요한 “을”의 각종 회계기록을 열람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 위 각항의 감독은 “을”의 책임부담을 감소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아니한다.

제 14 조(제세 및 운영경비 지불)

“을”은 현지 법령 및 엑스포 당국이 규정하는 로얄티, 관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보험료 등 제세공과금과 전기, 수도, 전화 등 시설이용 관리비를 엑스포 당국이 지정하는 시기 이전에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갑”의 승인을 얻은 경우 “을”은 동 금액을 엑스포 당국에 직접 납부할 수 있으며 직접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즉시 증빙서 사본을 첨부하여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15 조(심벌마크 사용)

필요한 경우 “을”은 “갑”을 통하여 엑스포 당국으로부터 사전승인을 얻어 엑스포 심벌마크를 사용할 수 있으며, 또한 “갑”의 승인을 얻어 한국관 심벌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제 16 조(사후처리)

1. “을”은 1999년 2월 29일까지 또는 엑스포 공식폐막후 1개월 이내에 “을”의 경비로 설치한 장치 및 비품은 “을”의 부담으로 철거하여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동 기일내에 철거 원상복구가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갑”이 이를 임의로 철거 원상복구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을”이 보상하여야 한다.
2. “을”은 엑스포 종료 즉시 현지 법령 및 엑스포 당국이 정하는 제세공과금을 납부하고 그 결과를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4 장 계약의 해지, 위약, 보증 및 손해배상

제 17 조(계약의 해지)

1. 본 계약은 다음의 경우 자동적으로 해지되며, 이 경우 “갑”은

“을”의 청구에 의하여 “을”이 계약해지 시점까지 “갑”에게 지불한 금액을 환불한다.

가. 엑스포 당국에 의한 엑스포 개최 취소

나. 정부 방침에 의한 엑스포 참가 취소

2. “갑”은 다음의 경우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이 “갑”에게 기 지불한 금액을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갑”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을”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보증금은 “갑”에 귀속된다.

가. “을”이 본 계약서상의 영업개시일(1998년 4월 30일)에 영업을 할 수 없다고 “갑”이 판단한 경우, 다만 영업개시일은 엑스포 당국의 공식 개막일을 영업개시일로 한다.

나. “을”이 엑스포 당국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엑스포 당국으로부터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

다. “을”이 법적으로 무능력하거나 파산하였을 경우

라. “을”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또는 이행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갑”이 판단한 경우

마. “을”이 영업부진등의 이유로 자발적으로 영업을 포기한 경우

3. 전기 2항에 해당하는 경우 “갑”은 계약해지 10일전 통고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을”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갑”은 기수령한 계약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계약보증금을 “갑”에 귀속시키며, “을”은 동 해약으로 발생한 “갑”의 모든 손실에 대하여 “갑”의 결정에 따라 배상할 의무를 진다.

제 18 조(위약금)

1. 다음의 경우 “을”은 계약보증금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

금으로 “갑”이 지정하는 기간내에 “갑”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 “갑”은 “을”이 납부한 계약보증금중에서 해당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가. “갑”의 시정촉구에도 불구하고 “을”이 본 계약 제5조 제1항 가호 내지 라호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나. “을”이 “갑” 및 엑스포 당국에 납부할 각종 부담금을 적기에 납부하지 않아 한국관 운영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케 한 경우
다. 기타 계약해지 사유는 되지 아니하나 본 계약상 “을”의 중대한 이무를 위반한 경우

2. 전항의 위약금은 정당한 사유로 인해 “을”이 본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고 “갑”이 인정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 19 조(계약보증금)

1. “을”은 본 계약상 의무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보증금으로 계약체결전까지 현금으로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2. 전항의 계약보증금은 “갑”을 피보험자로 하고 보증금액 이상의 정액보상의 특약조항이 있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보증기간은 계약기간 종료후 60일이 경과한 날까지로 한다.
3. 전기 2항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은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을”이 납부한 보증금은 보증기간의 경과후, “을”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 20 조(연대보증인)

1. “을”은 본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갑”이 승인하는 한국 내 연대보증인 1명을 세워야 한다. 다만, 연대보증인은 직매점 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법인 또는 연간 재산세 납부액 20만원 이상인 자에 한한다.

2. “을”은 연대보증인의 파산, 사망 등 보증인으로서 부적합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갑”의 요청이 있을시 지체없이 보증인을 교체하여야 한다.
3. 연대보증인은 “을”이 본 계약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을”과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4. 연대보증인은 인감증명서 및 재산세 납부증명서 각 1부를 본 계약체결과 동시에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21 조(의무대위이행 및 손해배상)

1. “을”은 “갑”이 엑스포 당국과의 한국관 참가계약에 의하여 얻은 “갑”의 직매점 운영권을 본 계약에 의하여 대행하는 것이므로 직매점 운영에 적용될 엑스포 한국관 참가계약상 “갑”의 의무조항을 대위하여야 한다.
2. 직매점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갑”, 엑스포 당국 및 직매점 방문객 등 제3자가 입은 손해는 “을”의 책임하에 배상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 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을”은 엑스포 당국이 규정하는 제반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 5 장 효력발생, 분쟁해결

제 22 조(효력발생)

본 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제 23 조(조항 해석상의 차이)

“갑”과 “을” 간에 본 계약 약정사항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시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제 24 조(분쟁해결)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으로 인하여 문제가 제기될 경우 “갑”과 “을”의 합의에 따르며,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여 야기되는 분쟁은 국내법에 의해 해결하기로 하되 관할 법원은 서울지방법원으로 한다.

제 25 조(계약서 작성)

본 계약을 위해 “갑”과 “을” 및 “을”의 연대보증인이 날인한 계약서 3통을 작성, 본 계약 당사자 및 연대보증인이 각각 1통씩 보관하며 공히 정본으로 한다.

1998년 3월 31일

“갑”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59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무역진흥본부장 정 해 수

“을”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356-157
밀양실업
대 표 서 혜 자

연대보증인 주소 : 서울시 동작구 상도3동 356-72
성명 : 예 청 태
주민등록번호 : 410407-1067021

VII. 사후처리

필리핀은 EXPO를 연장 개최기로 결정하고, 국제관도 연장 운영해줄 것을 각 참가국에 요청하여 왔는 바, 아국은 예산사정과 회계규정, 타 참가국과의 조화, 연장참가시의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다.

결국, 한국관의 한국측 운영은 '99. 1. 31 일부는 종료하고, 2. 1일부터는 한국관을 EXPO당국에 이양하여 6. 15일까지 연장 운영토록 하였다. 따라서, 한국관 사후처리 작업은 타 EXPO 한국관의 사후처리에 비해 복잡하였다.

우선, '99. 2. 1. 이후 한국관 운영 책임범위를 명확히하고, EXPO당국 책임하의 연장이라 하더라도 한국관의 이미지를 유지할 위해 충분한 전시품을 EXPO 당국에 기증하였으며, 나머지 전시품 및 비품은 대본사 및 무역관 반송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1. 한국관 운영 연장

가. 운영연장내용

- 당초 : '98. 6. 6—'99. 1. 31
- 변경 : '98. 6. 6—'99. 6. 15(4 1/2개월 연장)
- * EXPO 당국의 조기 폐회 방침에 따라 단축될 수 있음

나. 연장운영방법

- 한국측 운영은 '99. 1. 31일부로 종료하고, 2. 1일 이후 운영권을 EXPO 당국에 이양하여 공식 폐막일까지 계속 운영케 함
- '99. 2. 1일 이후 한국관 운영 및 폐막후 철거에 따른 모든 비용 및 책임은 EXPO 당국이 부담
- 연장운영기간 중 한국관의 위상 및 이미지를 유지할 위해 충분한 품목의 전시품을 EXPO 당국에 기증
- 마닐라 무역관장은 연장운영기간 중 한국관의 운영상태를 수시 점검

하고 운영상태가 한국의 이미지를 저해한다고 판단한 경우 15일 이내에 한국관 폐쇄 및 철거 요청

* 합의문을 작성하여 양측 대표 서명

다. 전시품 및 비품 사후처리

- 본사구입지원 전시품 : '99. 2. 1일부 엑스포 당국에 기증하여 폐관시까지 계속 전시토록 함.
- 무상입차 전시품 : 핵연료모형은 2. 1일부 반송, 기아컨셉트카모형은 엑스포 당국에 기증, 휴대폰은 현지 임대처에 반납 조치
- 영상기자재 : '99. 2. 1일부 본사 반송
- 본사지원 장치 전시품
 - PC : 2. 1일부 1set 기증, 1set 마닐라 무역관 이관
 - 일반장치물, 컴퓨터합성사진, 일반사진 : 2. 1일부 기증
 - 사계절인형, 모조전시품 : 한국관 폐관시까지 전시 및 공사 소유권 유지. 한국관 폐관시점에서 유지상태를 파악하여 처리방안(반송, 폐기, 기증 등) 결정

라. 한국관 철거

- 한국관 폐관시 엑스포 당국의 책임과 모든 비용 부담하에 한국관 철거토록 조치

마. 직매점 운영 건

- 한국관 공식 운영기간이 '99. 1. 31일 종료됨에 따라 직매업체와 공사간의 계약 관계도 동일부 종료
- 따라서 이후 직매점의 계속 운영여부는 밀양실업의 전적인 책임과 판단하에 EXPO 당국과 협의하여 결정토록 유도함.
- 다만, 직매업체에서 한국관 연장운영 기간 동안 영업을 희망하는 경우 EXPO 당국에 '99. 1. 31일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영업을 허용해 주도록 하는 내용을 합의문에 포함하여 편의 제공

- 이 경우 직매업체로부터 '99. 2. 1일부터는 엑스포 당국과의 사이에서 직매점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밀양실업의 책임하에 처리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각서 징구

2. 후속조치

가. 합의문 작성 및 서명

본사와 기 협의된 사항들을 포괄한 합의문 초안을 작성하여 현지 변호사 자문 등을 거쳐 엑스포 당국과 서명

나. 공과금 납부

'99. 1. 31일부로 엑스포 당국에 납부하는 공과금 총액을 확정 정산, 이를 명백히 하기 위해 공과금 완납증명서등 증빙을 확보하여 사본을 대 본사 송부

다. 전시품/비품 처리

- '99. 2. 1일부 대 본사 반송 품목
 - 운송업체 2개사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유리한 조건 제시 업체를 선정하여 반송 조치
 - 운송은 Door to Door(EXPO Site-무역센터) Base로 추진
 - 반송품에 대한 운송보험은 실가격 기준으로 확보하여 유사시 보상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
- '99. 2. 1 일부 대 엑스포 당국 기증 품목
 - 인수증(품명, 제조원, 모델명, 수량 등 적시)을 작성 EXPO 당국의 서명을 받아 대 본사 송부
- '99. 2. 1일부 무역관 이관 품목
 - 인수증을 작성 무역관장이 서명 및 인수토록하고, 마닐라 무역관 부외자산 대장에 등재하여 인수증 및 부외자산 대장 사본 대 본사

송부

○ '99. 2. 1일부 폐기 품목

— 폐기확인서를 작성하여 한국관장이 서명하고, 촬영한 사진을 첨부하여 대 본사 송부

○ 계속 전시 후 한국관 폐관시 처리방안 결정 품목

(사계절 인형, 모조전시품)

— 보험에 가입하여 전시토록 하되, 한국관 폐관시점에서 유지상태를 확인하여 재활용 가능여부를 대 본사 보고토록 조치

라. 선물용품 배포결과

○ 본사지원 주요 선물용품에 대해 배포대장 작성 및 한국관장이 확인 서명하여 사본 대 본사 송부

○ 배포 잔량은 대 본사 반송

3. 참가연장 관련 합의문

AGREEMENT ON THE EXTENSION OF KOREA'S PARTICIPATION IN EXPO PILIPINO '98

This Agreement entered into by and between :

The KOREA TRADE CENTER MANILA, organizer of the Korea-Philippines Friendship Pavilion,(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avilion) at the EXPO PILIPINO '98 and with principal office at 9/F Jaka Bldg., 6780 Ayala Ave., Makati City, Metro Manila, herein represented by its executive director, In-Taeg Lim;and hereinafter referred to as "Kotra"

-and-

EXPO PILIPINO CORP., organizer of EXPO PILIPINO '98 and with principal office at 8/F Antel 2000 Bldg., Dela Rosa & Herrera Sts., Legaspi Village, Makati City, Metro Manila, herein represented by its President & CEO, Benjie Lopez, and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EPC".

WITNESSETH : THAT

WHEREAS, Kotra is one of the participants in the ongoing EXPO PILIPINO '98;

WHEREAS, the original schedule of Korea's participation in the EXPO PILIPINO '98 is from June 6, 1998 up to January 31, 1999;

WHEREAS, it is the desire of EPC to have Kotra's participation in the EXPO PILIPINO '98 extended, i.e. from the period February 1, 1999 up to June 15, 1999 or such earlier date to be determined by EPC;

WHEREAS, Kotra has agreed to grant EPC's request for an extension of its participation in the EXPO PILIPINO '98 to cover the period starting February 1, 1999 up to June 15, 1999 or such earlier date to be determined by EPC, subject, however, to certain terms and conditions;

NOW, THEREFORE, it is hereby agreed that Kotra shall extend its participation in the EXPO PILIPINO '98 to cover the period starting February 1, 1999 up to June 15, 1999 or such earlier date to be determined by EPC, subject to the conditions hereinbelow stated :

- (1) THAT ownership of the physical structure of the Korea-Philippines Friendship Pavilion and the other structures and exhibition items left therein (an inventory list of the items to be left will fol

low), will be officially turned over by Kotra to EPC on February 1, 1999.

- (2) THAT from February 1, 1999, EPC, though still using the name Korea-Philippines Friendship Pavilion, shall assume full responsibility for all claims by third parties that might arise from the operation of the Pavilion during the extended participation.
- (3) THAT EPC commits to maintain and operate the Pavilion in the same manner that Kotra did up to January 31, 1999.
- (4) THAT the four(4) sets of season dolls and seven(7) pieces of imitation antiques will not be turned over to EPC but the latter will be allowed to use them until official termination of the Exposition or until optional termination of Korea's extended participation. However, EPC shall exert utmost efforts to take care of them otherwise it shall be responsible for damages, theft or any loss which is not covered by the insurance that Kotra will provide for them.
- (5) None of the turned over structures and exhibition items shall be withdrawn from the Pavilion before the official termination of the Exposition.
- (6) THAT effective February 1, 1999, all expenses relative to the operation of the Pavilion such as, but not limited to, electricity, aircon charges, maintenance fee, security service, import duties and taxes that may be levied by the Bureau of Customs and/or bureau of Internal Revenue on the building materials and exhibition items

turned over to the EPC as per Section(1) above, shall be shouldered by EPC.

- (7) THAT effective February 1, 1999, any and all liabilities to third persons/entities, as well as any responsibility for any claims or damages sustained by the latter as a result of the operation/maintenance by EPC of the pavilion, shall be for the exclusive account of EPC which shall hold Kotra free and harmless from any such liability, claims or damages.
- (8) THAT EPC will provide services of at least one(1) lady usherette each working day together with uniform same to those presently worn by the Pavilion's usherettes at EPC's expense.
- (9) THAT EPC shall include the Pavilion in the roving patrol of its security guards.
- (10) THAT EPC will include the Pavilion in its janitorial program and services.
- (11) THAT EPC shall allow the Kotra executive director or his dulyappointed representative to inspect the Pavilion and its operation at anytime and without need of prior notice to EPC. Kotra will have the option to unilaterally terminate its extended participation even before the closing date of the Exposition if, in its sole judgment, it is convinced that the Pavilion is not being maintained and operated properly in accordance with Kotra's standard. In which case, Kotra shall notify EPC in writing at least fifteen days(15) before the intended closure.

(12) THAT the Korean concessionaire inside the Pavilion, Milyang Co., Ltd., shall be allowed to extend its stay up to the closing date of the Exposition under the same terms and conditions, which include 10% royalty fee on gross receipts during Kotra's ownership of the Pavilion. EPC will collect the royalty directly from Milyang and shall hold Kotra free from any responsibility for the collection of this royalty, whether for the original schedule or for the extended participation.

(13) THAT upon official termination of the Exposition or upon Kotra's unilateral termination of its extended participation as per Section (11), EPC should demolish the Pavilion at its expense, including expenses for the disposal of the waste materials.

IN WITNESS WHEREOF, both parties have agreed to affix their signatures hereon this _____ day of January, 1999 in _____, Philippines.

KOREA-PHILS. FRIENDSHIP
PAVILION

EXPO PILIPINO CORP.

By : In-Taeg Lim
Executive Director
Korea Trade Center Manila

By : Benjie Lopez
President & CEO

RECEIPT OF EXHIBITION GOODS

This will confirm receipt of the following exhibition goods of the
 "Korea-Philippines Friendship Pavilion" from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Kotra) thru Mr. In-Taeg Lim, Executive Director
 of the Korea Trade Center Manila :

Item Name	Specifications	Qty.	Remarks	
(1) Hand PC	LG, Mobilian, H 111F104	1	Miniature	
(2) Video camera	LG, 8mm, LG-A300D	1		
(3) Digital camera	LG, SSC-350N	1		
(4) Mini component	LG, AIIA-RX11M	1		
(5) Portable CD player	LG, CD-290	1		
(6) Kia Model Car	Kia Concept Car	1		
(7) PC Set(Sambo Cybernex ATX)	CPU, 17" Monitor, Speak -er, Mouse, Keyboard	1		
(8) Voltage Regulator	Isuki AVR 500W	1		
(9) Emergency Lights		5		
(10) Fire Extinguisher	Yamato YA 10L	3		
(11) Interphone	Commax TP-NAP	2		
(12) Wooden Table	1.5M x 2M	1		
(13) Structures & Exhibitory	Wood panels, Korean traditional lanterns, embossed, characters, C/P panels, tags, space frame, tables, info desk, etc.			
(14) Computer-Edited Pictures	218m2		These are properties of Kotra. S/b returned to Kotra after termination of Expo Pil. '98	
(15) Pictures	67m2			
(16) Four season Dolls With Glass Case		4		
(17) Imitation Antiques		7		
(18) Floor Carpets		310	Sqm.	-do-
(19) Locks & Keys	1 chain lock & key, 1 numerical lock, keys of entry door.			

RECEIVED BY :

Atty. Benjie Lopez
 President & CEO
 Expo Pilipino Corporation

Date : Jan. 31, 1999

VIII. 타 국가관 연출

1. 인도네시아

가. 참가위치 : GOBAL CITY CLUSTER3

나. 참가규모 : 450S/M

다. 참가주제 : LET'S GO TO INDONESIA

라. 국가의 날 : 없음

마. 운영인력 : 관리요원은 주 1~2회 감독차 방문
안내요원 3명, 경미 4명

바. 전시경향 : 관광, 문화중심의 전시연출에 산업, 투자관련 전시연출 가미

사. 주요 전시내용

- 사진 패널과 함께 모형, 전통인형, 전통공예품 등을 전시.
- 내 인도네시아 투자진출 홍보 전시연출과 함께 별도코너를 마련하여 BUSINESS & INDUSTRIES 공간에는 케이블, 학용품, 식품, 기호품 (담배, 차 등)등의 자국에서 생산되는 공산품 전시 코너 설치.
- 입구 우측의 무대에는 대형 TV를 설치하여 인도네시아 홍보를 위한 영상·음향시설 설치.
- 인도네시아의 주요 관광지별로 자연을 소개하는 홍보용 패널 설치 및 지역별 특산품 등 전시, 소개.
- 조명-전체적인 자연조명과 실내조명을 조화시킴.

아. 특기사항

- 당초 참가 방침에 따라서 8. 22~9. 21 기간중 1개월간 개관후 철거하였으나, 필리핀 엑스포측의 다각적인 참가 연장설득으로 별도 공사를

하이 12. 24일부터 재개관 함. 재개관시의 전시연출 내용은 당초의 것과 별차이 없었음.

2. 브루나이

가. 참가위치 : GOBAL CITY CLUSTER3

나. 참가규모 : 255S/M

다. 참가주제 : 없음

라. 국가의 날 : 없음

마. 운영인력 : 없음(엑스포 당국에 위임 운영)

바. 전시경향 : 단순 패널 전시

사. 주요 전시내용 : 식유 채굴 및 관련 산업, 관광홍보패널 전시

아. 특기사항 : 전시관 건설 후, 사후관리 전무

3. 러시아

가. 참가위치 : GOBAL CITY CLUSTER3

나. 참가규모 : 175S/M

다. 참가주제 : CULTURAL & ECONOMIC RELATIONS BETWEEN
RUSSIA AND PHILIPPINES

라. 국가의 날 : 없음

마. 운영인력 : 러시아 직원 1명, 현지직원 3명(통역, 관리직원, 청소용역)

바. 전시경향 : 패넬 및 사진 전시와 아울러 샘플 전시

사. 주요 전시내용

- 러시아 발레 사진, 러시아 생산품(총기류, 첨단 광학기기, 화약, 의료기기, 주류, 캔디, 조선산업에 관한 사진, 패넬 및 전시품 위주)

아. 특기사항 : 전시기간이 단 2주에 불과('98. 6. 13-26)

4. 중 국

가. 참가위치 : GOBAL CITY CLUSTER1

나. 참가규모 : 508S/M

다. 참가주제 : CHINA IN PROGRESS

라. 국가의 날 : 없음

마. 운영인력 : 관리요원은 월 1회정도 감독차 방문(CCPIT 소속)
현지직원 8명(안내 2명, 보수유지 1명 포함)

바. 전시경향 : 발전하는 중국상을 과시하며, 조형물 위주의 전시

사. 주요 전시내용

- 우주선 발사 로케트, 로케트 발사센터에 관한 모형전시
- 스페이스 터널 연출, 로케트 발사 시뮬레이션 장치 및 비디오 설치
- 첨단 우주기술국으로의 중국상을 과시
- 조명은 스페이스터널용 섬광조명과 건시조명으로 구성되었으나, 연출 분위기 조성에는 다소 미흡

5. 일본

가. 참가위치 : GOBAL CITY CLUSTER1

나. 참가규모 : 600S/M

다. 참가주제 : 3E(ENERGY SECURITY, ENVIRONMENT PROTECTION, ECONOMIC GROWTH)

라. 국가의 날 : 없음

마. 운영인력 : 본사파견 관리직원2-3명, 현지채용직원 10-12명

바. 전시경향 : 자연, 환경 및 에너지에 관한 전시 연출로서 방문객의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흥미 위주의 전시

사. 주요 전시내용

- 첨단 전자장비를 통한 전시연출과 스티커사진 무료촬영으로 관객인기.
- HDTV를 통한 열대어 어항 영상기술, 홀로그래피를 통한 일본 전래 동화 소개, 전자게임 코너, 대형 멀티미디어 스크린을 통한 일본과 필리핀과의 관계 소개, 도요타 스포츠카를 협찬 전시하여 자동차 산업 국가로의 이미지 과시.
- 태양열 자동차 전시.
- 내방객의 스티커 사진을 촬영 하는 서비스를 제공.
- 조명은 완전 외부조명을 차단하여 입장시부터 실내가 영화관과 같은 분위기를 연출하면서 멀티비전과 전시품 집중조명.

6. 태 국

가. 참가위치 : GOBAL CITY CLUSTER1

나. 참가규모 : 100S/M

다. 참가주제 : 없음

라. 국가의 날 : 없음

마. 운영인력 : 없음

바. 전시경향 : 패넬전시

사. 주요 전시내용 : 관광 홍보물 전시, 패넬 위주의 전시

아. 특기사항 : 8. 31 철수

7. 미 국

가. 참가위치 : GOBAL CITY CLUSTER2

나. 참가규모 : 308S/M(전체)

- 대사관 : 120S/M
- 칼텍스 : 60S/M
- 코카콜라 : 120S/M

다. 참가주제

THE AMERICAN CONTRIBUTION TO PHILIPPINE EDUCATION

- 칼텍스관 : PEOPLE MOVING PEOPLE
- 코카콜라관 : REFRESHING THE FILIPPINO SPIRIT

라. 국가의 날 : 없음

마. 운영인력 : 관료요원 1명(대사관 파견)

경비 1명, 안내-각관별로 2명씩 배치(총 6명)

바. 전시경향 : 대사관, 코카콜라, 칼텍스의 3개 부속관으로 구성

사. 주요 전시내용

- 패넬 및 사진중심으로 전시.
- 비디오 영상 연출, 미국이 필리핀 교육에 미친 영향에 중점을 둔 전시.
- 미 군사기술의 대 필리핀 이전에 관한 비디오 설치.
- 코카콜라사가 후원한 미술 실기대회의 우수작품 전시.
- 코카콜라병으로 조형물 전시연출.
- FAST FOOD 판매대 모형 설치.
- 칼텍스 주유기 전시.
- 미국의 대비 진출시기의 교육기자재 전시(책상, 의자 등) 전체적으로 자연조명을 최대한 살림으로서 밝은 전시장 분위기 연출.

아. 특기사항

3개의 기관과 업체가 별도로 전시관을 구성하여 전시연출 및 관리(인원등) 입구는 칼텍스관을 통해서만 입장이 가능하므로 경비는 공동으로 관리

8. 영 국

가. 참가위치 : GOBAL CITY CLUSTER1

나. 참가규모 : 100S/M

다. 참가주제 : SPIRIT OF PARTNERSHIP

— FROM BRITAIN TO THE PHILIPPINES

라. 국가의 날 : 없음

마. 운영인력 : 관리요원 1명(월 2회 정기방문 감독)

경비요원 3명(교대근무)

안내요원 2명

바. 전시경향 : 소규모의 1개관에 10개 영국사가 별도의 홍보성 전시연출

사. 주요 전시내용

- ROLLS ROYCE, NATIONAL GRID, CABLE & WIRELESS, FBM ABOITIZ, BRITISH GAS INT'L, KVAERNER, BRITISH AIRWAYS, BIWATER, BRITISH AIRSPACE, ANGLICAN WATER의 10개사별 홍보용 패널 및 비디오 영상전시 연출.
- 영국계 필리핀인의 영국-필리핀 여행을 스토리로 구성, 컴퓨터 연출.
- 조명은 자연조명과 전시조명을 조화.

9. 싱가포르

가. 참가위치 : GOBAL CITY CLUSTER1

나. 참가규모 : 300S/M

다. 참가주제 : PARTNERS IN PROGRESS

라. 국가의 날 : 없음

마. 운영인력 : 관리요원 1명(월 2회 정기방문 감독)

현지직원(안내요원 3명, 기술자 2명, 청소용역 1명) 6명

경비 4명(교대 근무)

바. 전시경향

경제 중심의 싱가포르, 블록경제권에서의 싱가포르 역할에 관한 홍보, 전시연출

사. 주요 전시내용

- WORLD CLASS CITY AREA-멀티비전 영상연출
- THE TREE OF GROWTH-조형물 제작, 4개의 컴퓨터 영상 연출
- FUTURE VISION-싱가포르, 필리핀관계에 관한 패널 및 조명연출
- 입구인 WORLD CLASS CITY AREA와 출구인 FUTURE VISION은 암실과 같은 분위기 연출